인 권 감 수 성
향 상 과 정

사회복지분야(아동)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일 시 : 2006. 11. 6.(월) ~ 11. 9.(목)

◇ 장 소 : 남한강연수원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목 차

▣ 교육일정

▣ 강의내용

■ 마음열기 ····· 1

■ 인권 정의하기 ····· 7

■ 아동권리협약과 영역별 권리보장 방안 ····· 15

■ 인권위 NAP 권고안 ····· 33

■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 53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아동인권현황과 탈시설화 ····· 57

■ 방문조사와 아동인권평가지표로 본 시설보호아동의 인권현황 ····· 75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권리 이해 ····· 101

■ 희망 만들기 ····· 147

■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 161

■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사례 ····· 183

▣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03

2. UN아동권리협약 ····· 224

▣ 교육일정

<table>
<tr><th></th><th>1일차 (11/6)</th><th>2일차 (11/7)</th><th>3일차 (11/8)</th><th>4일차 (11/9)</th></tr>
<tr><td rowspan="4">오전
09:00
~
12:00</td><td rowspan="4">1. 등록
(11:30～12:00)</td><td>5. 아동권리협약과 영역별 권리보장 방안
(09:00～11:00)</td><td>9. 방문조사와 아동인권평가 지표로 본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09:00～10:30)</td><td>13. 장애인생활 시설에서의 인권보호사례
(09:00～10:30)</td></tr>
<tr><td>이재연
(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td><td>안석모
(인권위 침해구제3팀장)</td><td>윤덕찬
(교남 소망의집 기획실장)</td></tr>
<tr><td>6. 인권위 NAP 권고안
•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중심
(11:10～12:00)</td><td>10. 아동 ·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권리 이해
(10:40～12:00)</td><td rowspan="2">14. 발표
• 희망만들기 발표
• 교육 소감
(10:40～11:30)</td></tr>
<tr><td>정영선
(인권위 인권연구팀장)</td><td>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td></tr>
<tr><td rowspan="4">오후
13:00
~
17:30</td><td>2. 오리엔테이션
• 환영인사
• 교육과정 소개
• 인권위 소개
(13:00～13:30)</td><td>7.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13:00～15:00)</td><td>11. 희망 만들기
(13:00～15:30)</td><td>15. 설문조사 및 수료식
(11:30～12:00)

O 식사 후 귀가</td></tr>
<tr><td>이경숙
(에듀플랜 모더레이터)</td><td>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td></tr>
<tr><td>3. 마음열기 (Ice Breaking)
(13:40～15:30)

4. 인권 정의하기 (분임활동)
(15:40～15:30)</td><td>8. 현장의 소리 및 분임토의
• 아동시설 현장의 소리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아동 인권현황과 탈시설화
(15:10～16:00)
• 분임토론 및 발표
– 탈시설화에 대한 의견 교환
(16:10～17:30)</td><td>12.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15:40～17:30)</td><td rowspan="2"></td></tr>
<tr><td>고상준
(에듀플랜 모더레이터)</td><td>박숙경
(사회복지시설생활인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td><td>조영희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td></tr>
<tr><td>저녁
19:00
~
21:00</td><td>인권위 제작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상영 (자율 참여)</td><td colspan="2">자유시간</td><td></td></tr>
</table>

◆ 점식식사 : 12:00～13:00 ◆ 저녁식사: 17:30～19:00

▣ 교육장 안내

□ 남한강 연수원 안내도

○ 본　관 : 강의실, 숙소

○ 화합관 : 식당, 매점

□ 시설 안내

○ 체육시설

시설명	위치	이용시간	기타
축구장 등	본관 우측	일몰전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장
탁구장	화합관 입구	〃	출입문 양옆에 2기 설치, 라켓 대여 가능, 탁구공 필요

○ 후생시설

시설명	위치	이용시간	기타
식당	화합관 내	07:00~08:00 / 12:00~13:00 / 17:30~19:00	
매점	식당입구	07:00 ~ 22:00	

□ 본관 및 화합관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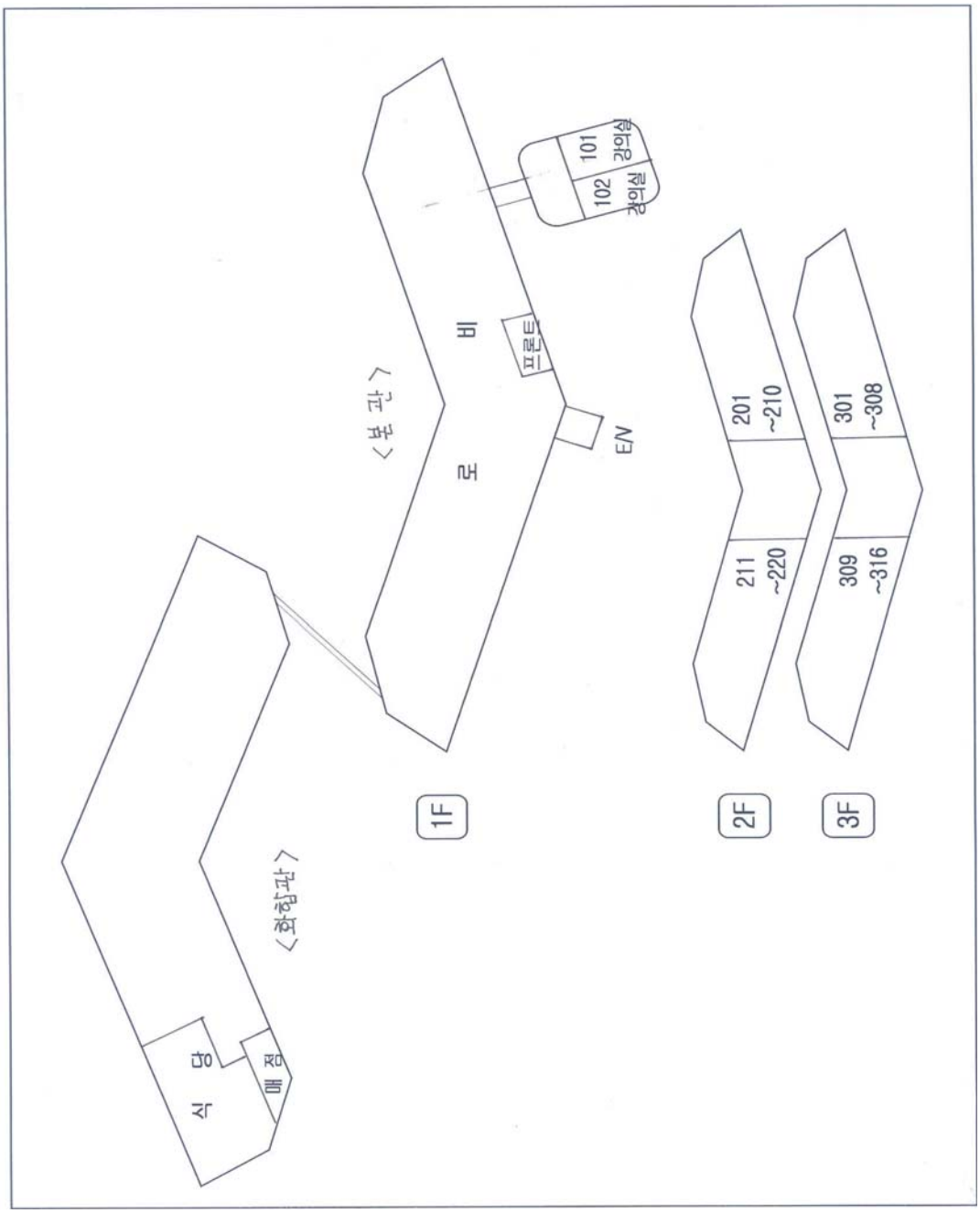

마음열기

마음열기 (Ice Breaking)

고 상 준 (에듀플랜 모더레이터)

■ 모서리 게임

모서리 게임은 참석자들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대답 중에서 자신의 견해와 가장 근접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게임이다.

❖ 진행순서

① 모든 참석자들을 강의실의 중심에 모이게 한다(강의실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② 게임 진행자가 질문을 제시한 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네 개의 답을 불러준다(예를 들어: “당신의 혈액형은?”).
③ 강의실의 네 귀퉁이에 서로 다른 답을 지정한다(예를 들어: “A형=첫째 귀퉁이, B형=둘째 귀퉁이, AB형=셋째 귀퉁이, O형=넷째 귀퉁이”).
④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귀퉁이로 가서 서로를 만나게 된다.
⑤ 각 귀퉁이에서 만난 참석자들은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진행을 위한 조언

- 모서리게임을 시작할 때에는 비교적 일반적인 질문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참석자들이 게임의 진행요령에 익숙해진 후에는 교육의 주제에 관련되어 결정 내려야 할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하면 된다.
- 이 게임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서로를 알게 함과 동시에 참석자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세미나 주제로 가는 첫걸음을 가능케 한다.

❖ 변이형

: 이 게임은 시작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질문이나 대답은 아주 많이 세미나 내용에 관계된 것들이어야 한다.

❖ 준비물

: 세미나 참석자들과 주제에 맞추어 ‘모서리 내용 판’에 제시할 질문들과 대답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의실도 이에 걸맞게 미리 배치되어야 한다.

❒ ‘모서리-내용’의 예:

① “열애중인 여자와 남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들의 애정표현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형태 중 한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모서리, 아무리 가까워져도 15~2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둘째 모서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이다. 셋째 모서리, 가벼운 포옹과 입맞춤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모서리, (책임질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애정표현을 다 해도 괜찮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모서리를 지지하십니까? 그 쪽으로 가신 뒤에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과 이유를 논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뒤에 전체로 모여 각 모서리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때로는 같은 혈액형끼리 모이게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청소년 담당간사, 사회사업부 간사’ 등 활동영역별로 모이게 한 적도 있다.

③ 그 외에도 네 모서리를 채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자원봉사교육의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파급되지 않는 요인 네 가지, 정치적 성향을 묻고 싶으면 4개의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사진 네 장, 여행하고픈 곳을 묻고 싶으면 유명 여행지가 속한 나라의 국기 네 장, 교육의 문제점 중 최우선 해결과제를 알고 싶으면 교육현안 중 문제점 네 가지…… 대략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하다.

■ 이름표 게임

❖ 기본형 "이름표 게임"

(서로를 잘 모르는 10~20명의 성인교육이라고 가정한다.)

❖ 준비물

: 참가자들의 이름표를 준비하되, 규격이 (12×10cm 정도) 크게 준비한다.

- 이름표의 한 면에는 이름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크게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취미, 특기, 나이, 사는 곳, 출신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상 등 그 사람을 손쉽게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한다.
- 위와 같은 정보는 참가신청을 할 때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 진행순서

① 참가자들은 진행자가 이름표를 뒤섞은 다음 무작위로 나누어 주는 이름표를 교육이 시작된 후에 한 장씩 받는다.

② 참가자들은 자신이 받은 이름표의 뒤에 적힌 정보를 암기할 시간을 가진다. 정보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35분이 적당하다.

③ 참가자들이 이름표의 내용을 다 암기한 후 진행자는 게임의 법칙을 설명한다.

❒ '이름표 게임의 예'

"이름표를 가슴에 부착하십시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누구의 이름인지도 모르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계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 지금부터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물론, 진짜 자신은 감춘 채 가슴에 달고 계신 그 분, 분명히 우리들 중에 계신 '이름표의 주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혹시 인사를 하고 다니시다가 자기 이름표를 만나더라도 절대 아는 척 하거나 눈치 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눈치를 보니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분이 있은 것 같은데…… 저기 오늘 지각하신 참가자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그렇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기의 가짜이름, 취미, 특기, 나이, 사는 곳, 출신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상 등 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 게임 진행 시 자신의 앞사람에게만 집중 될 수 있도록 경쾌한 음악을 크게 틀어주며, 인사가 마무리 될 때쯤 음악을 꺼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멈추게 된다.

④ 다음으로는, 이름표의 주인을 밝히는 시간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자기 이름표를 직접 찾아가도록 한다).

• 만약 충분한 시간이 된다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맨 앞에 계신 분, 잠깐 일어나시죠.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답을 들은 뒤) 모두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름표의 주인도 만나셨겠네요? 표정을 보니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참가자께서 먼저 이름표의 뒷면을 크게 읽어 주시죠. (읽는다) 좋습니다. 그럼 그분이라고 생각되는 참가자에게 직접 갖다 주십시오!"

• 이러한 형식으로 모든 사람이 이름표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도록 한다.(여러 장을 받는 사람과 한 장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서로의 면면을 익힘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역학을 하는 "역할게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해나가게 된다.

인권 정의하기

인권 정의하기

고 상 준 (에듀플랜 모더레이터)

■ '내가 생각하는 인권' 정의 내리기

'내가 생각하는 인권' 정의 내리기 위해서 Photostand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Photostand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 주제로의 도입단계에 •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를 물을 때 • 프로그램을 마칠 때 참석자들의 느낌이나 소감을 말할 때
준비물은?
• 그림이나 사진 다수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참석자 1명당 길게는 3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게임의 특징은?
•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다.
진행순서
① 사진(혹은 그림)을 보여주고, 주제(혹은 게임의 목적)를 설명한다. ② 참석자들은 사진은 선택한다. ③ 잠깐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한 명씩 돌아가며 발표한다.

➢ 이름의 유래:

Photostand는 책상에 올려놓고 가끔씩 보는 가족사진처럼 그림이나 사진 혹은 그림엽서를 사용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입니다.

➢ 사용목적:

정말 다양한 경우와 상황에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 주제로의 도입단계에서
-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를 물을 때
- 프로그램을 마칠 때 참석자들의 느낌이나 소감을 말할 때

➢ 진행순서:

교육을 마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Photostand를 소개합니다.
다른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A형: 한 장의 그림을 사용하는 기법

① 우선 100여장의 그림을 준비하고 그 그림들을 교육 공간 중앙의 책상 위에 펼쳐 놓는다.

② 책상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원형을 만든다.
(이전의 단계에서 흥분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음악을 통하여 마음을 다지기 위한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 필요)
옆 사람과의 대화는 허락되지 않는다.

③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아주 천천히 책상주위를 돌면서 그림을 살피게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림을 살피면서 책상주위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모두 입을 다무시고, 옆 사람과의 대화는 일체 허락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그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상 위에 놓인 그림들 중에서 '나는 인권을 이렇게 정의 하겠다' 혹은 '이 그림은 인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등등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줄 그림을 마음속으로 선택하십시오."

④ 참가자들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원의 안쪽을 향해 돌아서게 한다. 그리고는 진행자 자신이 미리 선택한 그림을 소개한다. (그림을 설명하는 기준과 방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림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⑤ 모든 참가자가 한 장의 그림을 선택하여 진행자가 보여준 방법으로 자신의 감상

과 인식, 의지와 결의를 소개한다. 이 때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림은 잡지 등의 책에서 오려낸 그림이나 콜라주기법과 마인드 맵핑에서 남은 그림들을 두꺼운 종이에 부착하여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그림엽서도 좋다.

2. B형: 세 장의 그림을 사용하는 기법

모든 참가자가 세 장의 그림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장은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예로, 나머지 한 장은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예로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선택이나 연상한 것들을 설명할 시간을 준다.

- 사용의 예: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문이나 잡지에 그림을 모으세요. 전단지도 좋고 또 신문속의 큰 그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모을 때 주의할 점은 가능하면 그림이 크고, 글씨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이 적격입니다.

■ 인권나무 만들기

이 단계에서는 각자가 정의한 인권을 잘 키우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지를 정리해내고, 반대로 인권의 수호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나무로 표현해내는 단계이다. 긍정적 요인은 푸르고 신선한 나뭇잎으로, 부정적인 요인은 누런색의 잎으로 표현한다. 인권나무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BrainWriting의 순서를 따른다.

Brainwriting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 어떤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생각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정리해내고 싶을 때
준비물은?
• 전지와 소포지 + 필기도 or 모더레이션카드 + 필기도구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 아무리 작은 주제라도 40분~1시간이 소요된다.
이 게임의 특징은?
•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낼 수 있다.
진행순서
① 아래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예를 정리해 놓았다.

➢ 이름의 유래:

머리(Brain)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글로 적는다(writing)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 사용목적:

Brainwriting은 Brainstorming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작업이다. 차이점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말로 발표하는 Brainstorming과 리 Brainwriting은 글로 적어낸다는 점이다.

➢ 진행순서:

여기서는 두 가지 형태의 Brainwriting을 소개한다.

1. A형 브레인라이팅

① 브레인라이팅은 2인1조, 4조1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② 두 명을 한 조로 하고 네 개의 조를 한 팀으로 묶어 조편성이 끝나면 진행자는 이미 주제가 맨 위에 적혀있는 종이를 모든 참여자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준다.
③ 종이를 받은 참여자는 혼자서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는다.
④ 아이디어를 모두 다 적은 참여자는 파트너와 함께 각각의 아이디어를 비교해 본다. 이때 가장 먼저 발견된 공동의 아이디어를 OHP 필름에 적은 후 옆 조로 전달한다.
⑤ OHP 필름을 넘겨받은 다음 조에 속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가 함께 내린 공동의 아이디어가 이미 OHP 필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으면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적은 후 다음 조에게 넘겨준다.
⑥ 이런 식으로 팀에 속한 모든 조가 답이 완전히 적을 때까지 쓰기를 계속한다.
⑦ 각 조별로 다른 주제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줌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모을 수도 있다.

2. B형 브레인라이팅

①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한다.
② 각 조에는 전지나 소포지를,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매직펜을 나누어 준다.
③ 참가자들은 조별로 자신들이 받은 소포지를 중앙에 놓고 둘러선다. 소포지의 중앙에는 이미 그 조가 다룰 주제가 기록되어있다.
④ 참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단어들을 기록한다. 기록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다.
⑤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다 써넣은 것처럼 보일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 종이를 중심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써넣었는지를 읽어보게 하라. 그리고 남의 아이디어를 통해 떠오르는 두 번째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하라.

➢ 사용의 예:

이렇게 모아진 아이디어는 교육의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데 아주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브레인라이팅 다음 단계가 마인드맵이면 브레인라이팅한 전

지를 옆에 놓고 그 안에 쓰여진 아이디어를 한 가지씩 지워가며 마인드 맵을 완성할 경우 모든 생각들을 빠짐없이 마인드맵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Mind-map 이외에도 <요리요리>, <ㄱㄴㄷ글짓기> 등의 단계를 연결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사진은 Brainwriting이 끝나고 난 후 Mind-map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아동권리협약과
영역별 권리보장 방안

아동권리협약과 영역별 권리보장 방안

이 재 연 (숙명여대 아동복지과 교수)

I. 아동기의 중요성

- 인간의 진화와 두뇌발달
- 신생아의 두뇌
- 신경과학으로부터의 메시지 : 초기 경험의 중요성 확인
- 현실과 아동기 투자에 대한 저항
- 아동의 권리 존중: 새로운 선택

2. UN 아동권리협약

1) 협약의 기능

- 아동권리에 대한 완전한 뼈대 제공
- 비준국에 대한 시행구속력
  - 현재 192개국이 비준
  -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의 제출
  -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 국가에 대한 권고
- 우리나라의 가입
  - 1991년 협약에 비준
  - 1994년 11월 1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
  - 1996년 2월 13일 심의
  - 1999년 11월 2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
  - 2003년 1월 13일 심의
  - 2008년 3.4차 국가보고서 제출 예정

2) 협약의 구성: CRC 8대 기본원칙(4-3-1 모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4개 조항은 3부로 나뉘어 제1부(제1조~41조)는 실질적 규정이며, 제2부(제42조~45조)는 이행, 그리고 제3부(제46조~54조)는 부칙으로 되어있다.

CRC 8대 기본원칙(4-3-1 모델)

구분	8대 기본원칙 내용
4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건강, 음식, 깨끗한 물, 교육, 안전한 정소 등)
	보호권 : 차별대우로부터의 보호, 학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 고아, 난민아동의 보호(폭력, 학대, 방임, 착취, 차별, 전쟁 등)
	발달권 :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정내 성장, 교육, 오락 등)
	참여권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이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생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을 가지는 것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하는 것)
3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하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며
	차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적요오디어야 한다
1	CRC의 실행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책임이 있다

생존권	관련조항 : 제 6,7,8,9,19,20,21,23,24,26,27,30,32,33,34,35,38조
보호권	관련조항 : 제2,7,10,11,16,19,20,21,23,25,32,33,34,35,36,37,39,40조
발달권	관련조항 : 제5,6,9,10,11,12,13,14,15,17,24,28,29,31조
참여권	관련조항 : 제12,13,15,17,24,28,29,31조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실질적 규정들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개의 기본 권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협약 제 4조는 “국가와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용이 가능한 물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협조아래 이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3대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3대 기본 원칙이 있다.

그 첫째가 아동에 대한 정의이다. 협약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흔히 아동과 청소년이라 지칭하는 연령대를 아동이라 부르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합의를 본 것이다.

둘째는 비차별의 원칙이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셋째는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이다.

협약 제 3조 1항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아동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면서 한 아동의 권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사회 내에서 다른 이들의 권리와 상충되거나 서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제 2부의 이행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첫째 협약에 조인한 나라들은 협약 내용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홍보의 의무가 있다.

둘째, 인권교육을 통하여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비준 후 2년, 그 후에 매 5년마다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와 그 진척상황에 대한 보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4대 권리의 이해

(1) 생존권

-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동들
  거리의 아동들
  장애아동

노동자아동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
난민시설의 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소수민족아동
학대당하는 아동

- **무엇이 생존권을 위협하는가?**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집 없는 아동과 고아
다양한 종류의 질병

- **생존권 관련 조항들**

- 제 6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24조 당사국의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기준을 함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보호권

차별에 대한 보호
착취에 대한 보호(노동, 성)
위기와 응급 상황에서의 보호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재난(천재지변-홍수, 지진, 가뭄 등)
전쟁(아동병사, 전쟁고아, 피난아동 등)
위법행동을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
거리의 아동들

- **보호권과 관련된 조항들**

차별과 관련된 조항
제 2조(비차별), 제 7조(성명과 국적), 제 23조(장애아동), 제 30조(원주민 아동)

착취와 학대에 관련된 조항
제 10조(가족의 재결함), 제 1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 16조(사생활), 제 19조(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제 20조(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 제 21조(입양), 제 25조(정기적인 심사), 제 32조(아동노동자), 제 33조(약물, 학대), 제 34조(성적착취), 제 35조(아동의 매매, 유괴), 제 36조(기타모든 형태의 착취), 제 37조(고문과 자유의 박탈), 제 39조(미성년자법)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에 관련된 조항
제 10조(가족의 재결합), 제 22조(난민아동), 제 25조(정기적인 심사), 제 38조(전쟁), 제 39조(재활 혜택)

(3) 발달권

아동의 발달권에는 정규, 비정규 교육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교육은 물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 발달권과 관련된 조항

제 17조(정보와 자료), 제28,29조(교육), 제 31조(정보와 자료), 제 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 5,6,13,14,15조(개인의 발달), 제 6,7조(정체성-국적, 성명 등), 제 24조(건강과 신체적 발달), 제 12,13조(표현의 권리), 제 9,10,11조(가족)

(4) 참여권

- **참여권이란?**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아동은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려깊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은 정직함, 신중함,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행동양식,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다.

이러한 점들은 아동이 지닌 자체적 동기가 그들의 복지에 대한 논쟁에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여권 관련조항**

제 12조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으며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따라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 13조 아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 15조 아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까지 논의된 아동의 권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아동의 권리

참 여 권		보 호 권		발달 및 생존권	
사회 참여	생활 참여	특별한 조건의 아동	모든 아동	발 달	생 존
· 정보접근권 · 결사 · 집회의 자유 ·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 · 표현 · 정보의 자유	· 의견표명권 · 프라이버시 · 통신 · 명예의 보호	· 피해아동의 사회복귀 · 무력분쟁시의 아동의 보호 · 소수자 · 선주민 아동의 보호 · 장애아의 권리 · 난민 아동의 보호 · 원조	· 부모에 의한 학대 · 방임 · 착취로부터의 보호 · 경제적 착취 · 유해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마약 · 향정신약으로부터 보호 · 성적착취 · 학대로부터의 보호 · 유괴 · 매매 · 거래 금지 · 타의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 고문 · 사형령의 금지 · 소년 사법에 관련된 권리	· 가정적인 환경에의 권리 · 교육의 권리 · 휴식 · 놀이 · 문화적 · 예술적 생활의 권리	· 보건의료의 권리 · 양육지정의 권리 · 사회보장의 권리 · 생활수준의 권리 · 이름 · 국적의 취득권

5) 협약의 이행

(1) 일반조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실천해야할 일반 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와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참조>.

〈표 2〉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주요영역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1차 권고)	· 비준 및 유보조항
· 입법	· 국가행동계획(NPA)수립 및 협력, 조정
·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 독립적인 모니터링
· 지방분권화	· 시민사회와의 협력
· 자원할당	· 포괄적 자료수집
· 인권교육 및 훈련	· 인식률 증대, 보급 및 홍보

출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200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2) 협약유보조항 및 유보이유

한국은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이듬해인 1991년 11월 20일에 제9조 (3), 제21조 (a), 제40조 (2)(b)(v)의 3개 조항에 대해서만 유보한 상태로 비준서를 기탁하여 아동권리협약은 같은 해 12월 20일 한국에 대해서도 발효되기에 이른다.

- 유보사항

유보 조항	유보 내용
제9조 제3항 제21조 제40조제2항(b)(v)	면접교섭권 입양에 대한 관계당국허가 상소권의 보장

- 유보이유

① 제9조 제3항 (면접교섭권)

>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협약은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부모면접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자녀면접권만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② 제21조 (a) (아동입양시 국가에 의한 허가)

>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협약은 아동을 입양할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869조는 15세 미만인 아동을 입양할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

을 뿐이며, 가정법원의 허가와 같은 법적 통제는 없음

③ 제40조 제2항 (b)(v)

>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협약은 형사재판에 관하여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제14조 제5항 유보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시 단심제를 허용하는 국내법 조항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유보함

(3) 유보조항 철회·권고 의견 이행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제고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다음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과 제1차,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요약이다.

〈표 3〉 Cluster에 따른 CRC 조항들

Cluster	해당조항
이행에 관한 일반원칙	조항4, 42, 44 para 6
아동의 정의	조항1
일반원칙	조항2, 3, 6, 1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조항7, 8, 13, 14, 15, 16, 17, 37(a)
가족환경과 대체양육	조항5, 9, 10, 11, 18 para 1-2, 19, 20, 21, 25, 27 para 4와 39
기본보건과 복지	조항16, 18 para 3, 23, 24, 26, 27 para 1-3
교육 여가와 문화적 활동	조항28, 29, 31
특별보호 조치	조항22, 32, 33, 34, 35, 36, 37(b)-(d), 38, 39, 40

〈표 4〉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요약

문제영역	권고내용
과도한 유보조항	조약유보철회
조약이행, 감시체제 미흡	- 조약교육, 홍보강화 - 아동옴부즈만 혹은 이와 동등한 독립적인 진정, 감시, 감시기구설치 및 민간단체와 협력
아동관련 정책평가를 위한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대책 부족	아동관련 정책평가를 위한 데이터수집방법과 분리지표체계마련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관, 심리학자, 보건인 등 아동관련 전문가 대상 조약교육부족	아동관련 전문가 교육 실시
여아, 장애아, 혼외아동 배려부족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자보호, 남녀차별적 최하 혼인연령제한 폐지
가족 지원부족	가족지원, 아동가장지원확대
국적권, 사상・양심・결사・집회 자유 미흡	- 국적법 개정 - 양심・표현・결사자유 보장
입양아동의 이익에 대한 배려부족	입양제도 개선
아동학대, 가정폭력, 아동유기, 아동가장 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예방감시 체제 구축
체벌 만연	체벌금지
경쟁적 풍토의 교육	교육정책 재검토
아동고용문제	최소고용연령조정
소년사법제도 미흡	소년사법제도 개선
일반적 이행	- 위원회 회의록과 권고의 홍보 - 국내법과 조약의 일치(비차별, 아동의 최대이익, 아동견해존중) - 아동권리에 국가자원배분강화 -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 참여강화

〈표 5〉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요약

문제영역	권고내용
1차보고서 심의 시 권고사항 이행 미비 분야	- 조약유보철회 -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아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캠페인 개발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아동참여촉진 -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 교육의 목표 반영 교육정책검토
국내법과 협약의 보조화	협약의 원칙과 조항 부합 조치
아동정책 및 사업을 위한 상설 총괄 조정 기구 미비	아동정책 및 사업조정 중앙상설기구 마련 및 권한, 재정, 인적·물적 자원부여
공공기관에 의한 협약이행점검	점검메커니즘 설립추진 및 점검
독립적인 점검(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결여)	-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전문가 위원배치 또는 아동권리소위원회설립 - 아동친화적인 방법 아동청원 접수
낮은 예산할당	가용자원 내 우선적 배정
18세 미만아동에 대한 전 분야의 통계수집 체계 미비	- 통계수집제도 마련 및 통계활용 아동정책, 사업수립, 이행점검 - 아동권리 지표개발
민간부분협력 기준설정부족 및 제한	협약이행 전 과정에서 협력강조
협약홍보	아동권리홍보캠페인 교육
혼인가능 최소연령의 남녀차이	여아와 남아 동일적용
입법, 정책, 사업 일반원칙 반영 미비	입법, 정치·사업·행정적 결정과 사업에 원칙적용
인종차별정보 미비, 헌법에 차별금지 미명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 입법화 및 공공교육 캠페인 실시
아동견해존중 저해되는 사회 분위기	- 복지법개정 등 촉진입법화 교육 - 아동의견 정책, 사업, 영향력 검토
학생회의 표현결사의 자유제한	표현결사자유 향유토록 법개정
학교에서의 체벌허용	체벌금지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한계	- 대안양육, 입양환경개선 - 헤이그협약비준 - 양육비 지급문제해결
기초보건과 복지환경개선	-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모유수유권장, 청소년보건연구실시 - 장애통합교육확대
교육에서의 차별 및 낮은 수준	교육정책 검토
특별호보조치 개선	- 상업적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개발 - 소년사법제도개선 - 이주자 자녀권리보장
기타	- 선택의정서 비준 - 정부보고서 등 홍보 - 차기보고서 3,4차 통합보고서로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

6) 선택의정서

(1)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2개의 의정서를 뉴욕에서 열린 제54회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채택일: 2000년 5월 25일

*발효일: 2002년 1월 발효(10개국 비준)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6일 서명, 2004년 9월 24일 비준, 2004년 10월 24일 발효 (비준 1개월 후)

(2) 보고서 제출

- 의정서 발효 후 2년내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
-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제출

(3)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의 정의, 처벌, 국제적 협력, 법적조치와 집행에 대한 내용 포함.

(4)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
- 18세 미만 아동의 무력분쟁 직접참여 금지, 의무징집금지, 법적행정적 국내조치 촉구, 국제협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 유엔아동특별종회 및 각종 아동인권을 위한 회의

- 유엔아동특별총회 : 2002년 5월 / 정부대표, NGO대표, 세계아동 404명, 한국아동 대표5명

- 동아시아태평양지역아동, 청소년포럼 : 1차(태국 좀티엔), 2차(라오스 브양티안), 3차(한국 서울)

"어린이를 위한 약속" 10대 실천항목 Say Yes for Children

1. 차별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자
2. 어린이를 먼저 생각하자
3. 모든 어린이를 보살피자
4. 에이즈와 싸워나가자
5. 어린이를 해롭게 하고 착취하는 행위를 중지하자
6. 어린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7. 모든 어린이를 교육시키자
8. 어린이를 전쟁에서 보호하자
9. 어린이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자
10. 가난을 퇴치하고 어린이에게 투자하자

3. 협약과 아동정책

1)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 정책

-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총체적인 뼈대
- 국가가 다뤄야 할 주요정책 분야제시, 정책의 효과
- 어떤 처방은 없음, 정책 시행 방법론 규정은 없음, 국가 측에 해석 여지 남김. 나라마다의 소요나 자원, 정치체계 등 사정이 달라서 구체적인 해석 천차만별
- 협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나라마다 차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평가과정 도입하면 여러 효과 기대
- 건설적 대화분위기 조성
- 정부와 민간단체 표준화된 틀 사용
- 국가간 비교가 용이

2) 단편적 접근 방지

- 협약은 특정 정부에 의해 단편적 이용
- 기존 정책의 장점 정당화하기, 이행 안 된 취약 분야 회피
- 정부 비판세력은 주장하는 특정 이해관계 하나만 주장하는 도구로 협약을 이용할 수도 있음

3) 협약을 활용한 아동정책 분석의 예

q 간접적인 차별이든, 악의 없는 차별이든, 차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과 사업내용이 아동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구조적 장치와 정책 마련

q 아동을 위한 국가의 행동계획을 계획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단체와 아동대표가 참여하는 체계 구축

· 1단계 - 분석에 포함될 기관 정하기

· 2단계 - 기관별 관련 협약조항 파악하기

- 협약의 어느 조항을 어느 기관과 관련하여 평가할 것인가를 정함
- 모든 조항에 관련 기관이 있을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특정 상황에서 최소한의 관계만 있을 수도 있음
- 각 조항들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으로 배분한 가장 매트릭스의 예(표)

아동정책분석틀:
부서별 해당 조항의 가상 매트릭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1. 아동의 정의	?	?	?	?
2. 비차별	?	?	?	?
3. 아동 최선의 이익	?	?	?	?
4. 권리의 이행	?	?	?	?
5. 부모의 지도와 어린아이 능력 개발				
6. 생종과 발달				
7. 이름과 국적				
8. 신분의 보존				

- **3단계 - 현행 정책 기술**
- **4단계 - 정책을 강화하는데 제기될 이슈들**
- **5단계 - 이슈간 우선순위 결정**
- **6단계 - 이슈의 규정, 목표설정, 옵션분석**

4. 국가 발전을 위한 리더쉽 발휘

1) 아동에 대한 4가지 희망

- 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역량을 충분히 펼치도록 하는 것
-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
-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곳에서 사는 것
- 빈곤이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아니게 하는 것

2) 국가 발전을 위한 4가지 실천 사항

- 아동의 생존을 최우선순위에 놓기
- 생존한 아동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
- 부모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게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 어떤 종류의 폭력과 차별도 없는 사회, 아동과 여성의 삶과 이들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 만들기

q 이러한 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쉽 발휘하기

인권위 NAP 권고안

인권 NAP와 아동인권

정 영 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장)

들어가는 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

올해 초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권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범국가적인 인권 청사진인 인권NAP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NAP권고안은 말 그대로 정부에 인권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제부터 인권위가 작성한 인권NAP권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NAP 수립 의의, 아동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인권NAP권고안이 제시한 아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겠다.

인권NAP 수립배경

인권NAP 수립은 두 개의 대외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178개 국가는 세계 각 나라가 인권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른 하나는 2001년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로 약칭)의 권고이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인권NAP를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 사회권규약 정부보고서를 제출하는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외적 배경만으로 한국정부가 인권NAP 수립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한국정부는 2001년 11월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한국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해 왔다. 인권위는 인권관련 정책・법

령・제도・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능, 차별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기능, 인권교육 기능 등을 담당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인권NAP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와 맺은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 각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국내적 요구도 컸다. 즉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인권 문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권 종합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NAP가 수립되면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명확한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권 정책 관련 대내외 인식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인권NAP를 통해 인권 취약부분을 진단하고 취약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다른 대규모 정책 사업도 인권 정책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일반 국민 사회에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의식과 생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인권위의 인권NAP권고안 작성 배경

인권위는 이미 2002년 4월경부터 인권NAP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호주를 필두로 하여 인권NAP 수립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은 인권과 관련해 국제교류가 잦았던 국가인권위에도 손쉽게 상륙했다. 인권위는 2002년 8월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작성된 「인권NAP 안내서(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를 번역 출간하여 인권NAP 작성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마련했다.

2003년 하반기에는 인권NAP를 누가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미 인권NAP를 수립한 국가의 경험에서도 어느 국가는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또 어느 국가는 인권기구가 중심이 되어 인권NAP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인권위와 법무부가 서로 인권NAP 수립을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03년 10월 정부 부처간 협의에 따라, 인권NAP 수립 과정은 '권고안 작성'과 '본 계획 수립 단계'로 이원화했고, 국가인권위는 '권고안 작성' 기관으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됐다. 국가인권위는 인권 전문기관으로서 인권NAP의 방향과 지

침을 제공하는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후 과정은 정부의 각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와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권NAP는 다른 나라의 수립 과정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권NAP 권고안 작성, 인권NAP 수립, 인권NAP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3단계를 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국가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고,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되면 정부는 별도의 조정기구(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이나 특정 정부 부처)가 인권NAP 수립을 완성하고, 이렇게 완성된 인권NAP를 기반으로 관련 정부 부처가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권고기관 없이 바로 수립기관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국가인권위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각 정부기관, 인권단체 및 각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는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정이나 수립 과정에서 인권NAP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와 정부부처간의 성격과 권한에 따른 역할 조정을 통해 수립되는 우리나라의 인권NAP는 현실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인권가치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NAP 수립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기능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기능적 근거는 국가인권위가 국제인권 기준 및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핵심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인권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구임과 동시에 향후 인권NAP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라는 점이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과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을 들 수 있다.

인권위의 인권NAP권고안 작성 과정

국가인권위는 가장 먼저 인권NAP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일

에 착수했다.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정부 연구기관들의 각종 보고서, 인권단체들의 자료집 등이 우선적으로 수집되고 검토됐으며 주요자료 번역과 기초현황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특히 인권NAP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6건(자유권-8건, 사회권-10건, 사회적소수자-7건, 인권교육-1건)의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사회의 인권현황과 인권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해 'NAP추진기획단'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운영했다. 학계·전문가(9명), 인권단체 대표(7명) 등으로 구성된 NAP추진기획단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정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 정책토론회, 서면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인권단체의 전문성은 인권NAP 권고안의 가치를 더욱 높였으며, 특히 인권NAP 권고안에 담을 의제를 발굴하는 데는 인권·사회단체들이 좋은 조언을 해 주었다.

권고안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마지막 절차는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였다. 정부부처의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실무차원에서 진행된 인권NAP 권고 내용에 대한 정책협의는 인권NAP 권고안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잖은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집행기관인 정부는 민감한 국민정서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문제 삼으며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로서는 '인권'이란 항목의 보편적이고 상호 불가분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향후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결집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역량을 총결집시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됐다. 2005년 8월부터 인권위원 5명으로 '인권NAP 권고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NAP 권고안의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 워크숍도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인권NAP권고안의 구성

총 3부 19장으로 구성된 인권NAP 권고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등의 인권 개선방안을 담고 있

다. 또한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까지 다양한 인권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인권NAP 권고안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우선을 두었다. 또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국가인권위는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집중했다.

인권NAP 권고안에 어떤 부문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되는 부분이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배치한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 부분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 모두 11개 부문을 선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권고안에 담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과제의 시급성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집중해야 하는 분야 중에서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분야를 정하는 것이었다.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및 취약계층의 여성 등이 그 범주에 들어 왔다. 다음으로는 당사자 스스로는 의제설정이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 분야이다. 한센인, HIV/에이즈 감염인 등 병력자 인권, 그리고 성적소수자 및 시설생활인 인권 등이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채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한 복지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약자・소수자의 인권 지킴'을 추구하는 '인권' 본연의 임무를 제시한 것이다. 정의(Justice)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미국의 윤리학자이며 정치철학자인 롤즈(John 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 즉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이미 정의가 아니다"는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권NAP 권고안의 구성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한다든지, 많은 정책적 과제를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인권NAP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NAP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평가

1월 9일 인권NAP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며칠 동안 일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권고 내용 중 일부는 너무 진보적이다거나 몇몇 부분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인권위의 권고는 어느 정도 미래 지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인권NAP 권고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국내에서도 실현하려는 것이자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을 국제기준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상황논리로 인권NAP의 각 추진 과제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들을 속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상당 부분은 국가인권위의 성격과 기능,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오해와 무지,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이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할 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인권NAP 권고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NAP 권고안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NAP 권고안이 향후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NAP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2006년 현재의 시점에서 인권NAP 권고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또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행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권NAP 권고안이 한국사회를 불법시위와 불법파업이 만연하는 분열과 혼란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NAP 권고안은 이미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도달했거나 이제라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NAP권고안 내용 중에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던 대표적 사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일정 범위 확대',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 또는 개선', '쟁의행위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부과를 완화하는 등으로 쟁의행위 보호',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등이다.

현재 정부는 법무부를 주관부서로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NAP권고안에 기초하여 향후 5년(2007~2011)에 걸쳐 인권관련 정책과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 정부의 인권NAP에 가능한 많이 반영되도록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아동인권과 수평적 사회

우리사회에서 인권위 업무와 관련된 논의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인권의 핵심 대상인 아동, 즉 아동권에 대해 정리하겠다. 일부언론을 비롯한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위 업무를 평가하면서 "인권위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와 두발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고 하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다"고 자주 거론한다. 그 말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왜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일기장 검사 또는 두발자유 제한으로 인한 아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경시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는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제기하여 검토된 것이다. 인권위가 인권적 관점에서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에 대해 검토하면서 고려했던 것은 우리사회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아동권은 수직적 사회보다는 수평적 사회에서 보다 더 잘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평적 사회에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수평적 사회에서 아동은 하나의 권리를 지닌 객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아동권 전반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동 협약의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2004년), 아동의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2004년) 등을 비준하고, 영유아보육법(1991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1998년), 청소년보호법(1997년) 등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1991년)을 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

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교육 기회나 질의 차이,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 본래의 목적 달성,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권리 보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1996년, 2003년)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아동・청소년(저소득층아동, 장애아동, 농어촌아동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재정을 확충하고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복지법・민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의 정비, 부모 이혼시 아동양육비 지급 등 제도적 장치 강화, 파행적 학교운영(자율학습, 0교시, 방학보충학습 등)의 정상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동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아동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이익의 최우선적 고려(제3조),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한 적절한 감독과 지도(제5조), 입양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호(제21조), 아동학대・성매매 예방과 보호(제19조, 제32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등), 아동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및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제31조),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제40조, 41조), 아동의 건강 보호,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 시행 의무(제3조, 제24조),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제18조 3),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 무상교육 및 재정적 지원 제공 의무(제28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경우 아동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를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하게 비중을 둘 의무(제12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하였다. 그 권고 중에는 헤이그 협약 비준, 아동학대・방임・체벌 개선, 국제기준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개선(1996년),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아동관련 보호시설의 정기적인 감사**(2003년),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를 개선하는 효과적**

인 조치시행,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공공건물과 공공영역에 장애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확대(1997년), 학습의 질을 높이고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의 개인 부담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2003년), 초·중등학교에서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교육부 지침과 학교 교칙 개정을 통한 학생회의 정치활동 금지 완화(2003년) 등을 권고했다.

인권NAP 권고안과 아동권

인권NAP권고안은 4개의 영역*(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보육·교육 혜택 확대, 아동의 참여권 보장 등)*으로 나누어 아동인권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영역에서는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① 대안가정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및 지원확대 ②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민법 개정 ③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조치 강화 ④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⑤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강화 ⑥ 수사, 재판, 구금에서 아동권 보호 강화 **⑦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⑧ 아동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영역에서는 ① 취약계층(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②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과 영양식 지원 강화 ③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건교육 시행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셋째, '보육 및 교육 혜택 강화' 영역에서는 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지원 강화 ②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③ 시·군·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④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⑤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⑥ 아동의 행복추구권 및 발달권 보장을 위한 입시경쟁 완화 교육정책 수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서는 ① 아동 정책 수립시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아동의 참여 보장 ②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③

부모의 합의 이혼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문제를 반드시 합의하도록 관련법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나오는 말

이제까지 인권위가 작성한 인권NAP권고안의 의미, 정부의 인권NAP수립 의의 등을 중심으로 인권NAP에 대한 것과 아동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인권NAP권고안에 들어있는 아동권 관련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아동을 권리를 지닌 객체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에서 볼 때 인권NAP권고안에 들어있는 아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중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정부에 권고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NAP권고안이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이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방향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인권NAP 중 아동 · 청소년 부분

<아동 · 청소년>

5-1 서론

○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동 협약의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2004년), 아동의매매 ·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2004년) 등을 비준하고, 영유아보육법(1991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1998년), 청소년보호법(1997년) 등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1991년)을 개정하는 등 아동 ·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교육 기회나 질의 차이,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교육 본래의 목적 달성,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권리 보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1996년, 2003년) 등을 이행하는 데 미흡함

○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아동 · 청소년(저소득층아동, 장애아동, 농어촌아동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재정을 확충하고

○ 아동복지법 · 민법 ·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의 정비, 부모 이혼시 아동양육비 지급 등 제도적 장치 강화, 파행적 학교운영(자율학습, 0교시, 방학보충학습 등)의 정상화 등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인권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며

○ 가정과 학교, 아동과 관련된 시설에서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5-2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 **목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여 아동권을 보호함

□ **현황 및 필요성**

○ 아동은 출생과 함께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수 아동이 부모의 이혼・사망・가출・빈곤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현행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체계는 사실상 국가가 학대아동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미흡함

○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학교폭력, 유해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청소년기본법(제5조)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따라 법적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함

○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은 아동학대와 폭력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아동 성매매・성착취 등의 규제와 처벌을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이익의 최우선적 고려(제3조),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한 적절한 감독과 지도(제5조), 입양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제21조)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대・성매매 예방과 보호를 규정하고(제19조, 제32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등), 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금지를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41조)은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헤이그 협약 비준, 아동학대・방임・체벌 개선, 국제기준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개선(1996년),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아동관련보호시설의 정기적인 감사(2003년) 등을 권고함

□ **국가 정책방향**

○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위탁가정과 같은 대안가정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늘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양 최소화

○ 민법 등을 개정하여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가)에 대한 유보 철회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명단등록제 등을 통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 아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가정・보육시설・유치원・학교・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 유해매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육・학교・주거지역에 유흥업소의 단계적 축소 및 신규허가 금지 등을 통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강화

○ 선도보다는 처벌을 우선하는 검사선의주의 개선, 연소범죄자를 위한 치료형 보호서비스 확충, 성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 시설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국가의 감독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등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조치 강화

5-3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목표 :** 아동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

□ **현황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가구임에도 엄격한 요건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식아동의 실태와 그들의 복지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생식보건상담 및 서비스가 요청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아동복지법(제4조)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 청소년기본법(제49조)은 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인권・건강 보장과 복지향상,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제24조)은 아동의 건강 보호,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조치시행,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공공건물과 공공영역에 장애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확대 등을 권고함(1997년)

□ **국가 정책방향**

○ 취약계층아동(저소득층・차상위계층・장애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보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학교급식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하며 영양식단을 공급하여 급식안전성을 확보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영양식 지원 제도 강화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건교육 시행

5-4. 보육・교육 혜택 확대

□ **목표 :** 영유아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업료만 면제되고 기타 교육에 필요한 현장학습비와 특기적성활동비 등은 학생이 부담하여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제한됨

○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함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하고(제4조), 특수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실시를 규정함(제18조, 제20조)

○ 영유아보육법(제4조)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 유아교육법(제3조)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

○ 청소년기본법(제50조)은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8조 3)은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8조)은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 무상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습의 질을 높이고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의 개인부담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권고함(2003년)

□ 국가 정책방향

○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및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공공보육시설 확충, 무상교육과 보육료의 감면 혜택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지원 강화

○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강화

○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아동발달과 관련된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시·군·구별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 장애유형별 특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한 정기적 조사에 기초한 서비스 개선,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확충,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방안 마련 등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중등교육의 단계별 무상화 추진
○ 아동의 행복추구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교육정책 수립
○ 가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가출 청소년에 적절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쉼터 제공

5-5. 아동의 참여권 보장

□ **목표 :**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활성화함

□ **현황 및 필요성**

○ 아동과 관련된 각종 정부 정책 수립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 등이 미비하여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 및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 제4조)은 청소년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함
○ 교육기본법(제5조)은 학생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함(2002.9)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은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경우 아동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를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하게 비중을 둘 것을 명시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교육부 지침과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2003년)

□ **국가 정책방향**

○ 가정・학교・사회에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아동 정책 수립시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아동의 참여 보장

○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자 및 당사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참여 보장

○ 부모의 합의이혼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문제를 반드시 합의하도록 관련법 정비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이 경 숙 (에듀플랜 모더레이터)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를 위해서
‘등 뒤의 인권’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1. 전지 20장을 미리 벽에 붙인다.
2. 진행자『이 시간은 우리 스스로 소수자가 되어서 어떤 차별을 당하는지 체험 해 보고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차별의 언어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3. 진행자가 참가자중 한명을 나오게 하여 등 뒤에 시트지를 붙여준다.
4. 등 뒤에 붙은 시트지를 보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것인지 2~3명씩 벌집을 한다(이때 등 뒤에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에게 이어폰을 주며 음악을 듣게 한다).
5. 2~3분이 지난 후에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를 중간에 서게 하고 거리두기를 한다.
6. 참가자들이 거리두기의 자리배치가 끝나면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가 천천히 다른 참가자들 사이를 지나가고, 이때 옆에 있는 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말이나 행동을 한다.
7. 참가자들의 사이를 다 지나 앞쪽으로(진행자가 지정한곳) 나오면 진행자가 시트지를 붙인 참가자에게 질문을 한다.

<질문> A.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B. 자신의 등뒤에 붙어있는 소수자는 누구일까요?

8. 진행자『그 자리에 서서 이 역할을 한사람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적을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9. 등뒤에 붙어있는 시트지를 떼어 주고 붙였던 사람이 전지 한 장에 떼어낸 시트지를 붙이게 한다.

10. 두 번째 역할을 할 참가자를 뽑고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참가자가 두 번째 참가자의 등에 붙여주고 방법은 첫 번째와 동일하며 이렇게 20번까지 한다.
11. 20개 전지의 자기 것 앞에 서서 그 사람(소수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다.
(사과를 해도 되고, 위로를 해도 되고, 등등)
12. 한 칸씩 옆자리의 전지로 옮겨간다.

※ 11번, 12번을 하는 이유: 말을 하면서 소수자역할을 하는 사람과 소수자에 게 말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 대상과 화해, 용서하며 그 동안 했던 차별을 생각해 보게 한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아동인권현황과 탈시설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아동인권현황과 탈시설화

박 숙 경 (사회복지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Ⅰ. 연구의 배경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1]이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정부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할 것과 탈시설방향에서의 아동양육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06년 현재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용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실시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평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사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물리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해체 등으로 요보호아동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탈시설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로 아동복지시설과 수용아동의 수가 90년대 들어 줄어들다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의 과반수이상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굳이 유엔의 권고를 들지 않고서도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아동복지현장에서 '탈시설화'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부진하며 관련 연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탈시설화에 대한 요구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선행연구와 필자의 현장경험[2]을 바탕으로 탈시설

1) 재단이사장의 불법 횡령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재판중인 성람복지재단(2006), 직원들에 의해 수용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인화원(2006), 종교시설을 빙자하여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각한 아동학대와 방임이 이루어졌던 수경사(2005), 바울선교원(2005), 지인언어치료원(2005) 등 시설수용 아동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아동복지시설과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탈시설 운동과 정책의 흐름을 짚어보고,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탈시설화의 개념과 쟁점

1) 사회복지시설의 기원

사회복지생활시설은 17세기 이후 설립된 영국의 강제노역소(work house)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농토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 결과 가난한 사람과 부랑자가 많이 생겼다. 그리하여 1601년『엘리자베스구빈법(救貧法)』에 따라서, 빈민의 부조 외에 빈민·부랑인과 자녀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산업혁명기에 피부조(被扶助)인구가 급증하자 늘어난 구호부담을 줄이고 노동 가능한 빈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목적에서 1834년 신구빈법(新救貧法)이 제정되었다. 신구빈법은 원외구호를 금지하여 노역소외에서 임금과 구빈수당을 받는 길을 봉쇄하였다. 신구빈법에 따라 원외구호가 중단되면서 노역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폐쇄적 공간에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집단생활을 하는데 따른 과도한 규제, 감독관의 횡포 등으로 당시 노역소와 구빈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이었다. 이후 사회발달에 따라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발달단계는 대체로 사회방위적 단계(1601~1834), 사회보장적 단계(1834~1950년대 탈시설화 등장 이전), 사회복지적 단계(1950년대 이후)로 나뉜다. 사회방위적 단계는 신구빈법 제정 이전까지의 시기로 사회보호를 위해 멸시와 억압의 대상인 빈민, 부랑인, 장애인 등을 격리·수용한 단계를 뜻한다. 사회보장적 단계는 신구빈법 제정 이후 1950년대 탈시설화 등장 이전까지의 시기로 시설생활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까지 수준이 향상된 시기로 대규모수용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사회복지적 단계'는 1950년대 탈시설화 정책과 정상화이념, 시설의 사회화 등의 출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

2) 필자는 2003년 11월부터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이하'조건부시설공대위')와 조건부시설공대위 후신인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의 결성과 활동에 참여하여 바울선교원등 7개 문제시설에 대한 조사활동, 장애인생활시설생활인인권상황실태조사(2005년), 미전환미신고시설민관합동실태조사(2005년), 1차 아동복지시설 국가인권위 방문조사(200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 등에 참여해왔다.

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분류된다. 한국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대체로 '사회보장적 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여전히 '열등처우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방위적 단계의 전근대적 시설이 많은 것 같다. 시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집단생활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각국의 사회복지시설에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15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해외 구호단체들 즉 민간단체에 의해 고아원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제정이후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도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표출됨에 따라 장애인, 아동, 영유아, 노인, 여성, 모자, 부랑인 등 복지대상자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점차 증가되어 왔다(이태수, 2003). 이중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보육시설 등이 있다(전재일 외, 2003).

서구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역사적 도입 배경은 다르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자립이 어려워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효율적 보호방식으로 집단적 수용의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다. 이러한 폐쇄된 공간과 집단적 수용이라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 그동안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는 끊이지 않고 심각한 인권문제와 불법 비리가 발생해 왔다.

2) 탈시설화의 개념과 근거이론

탈시설화의 본래의 의미는 시설보호대상자들의 시설의존을 줄이기 위해 가정이나 가급적 가정 상황에 가까운 환경에서 비 시설적인 방법으로 보호체계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미국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에 의하면 탈시설화란 ①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②시설내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③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전재일 외, 2002).

탈시설화의 개념은 1950년대를 전후하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장애인의 보편적 주거공간에서의 삶을 강조한 정상화원리(nomalization)와 1951년 국

제연합보건기구에 의한 조사보고서에서 존 보울비(J. Bowlby)에 의해 제기된 모성박탈 이론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중 정상화원리는 장애인, 모성박탈이론은 아동의 탈시설을 이끌어내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인권의 가치에 주목[3]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데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1) 정상화 이론(Nomalization)

정상화 이론은 1940년대 스웨덴의 학자 누리에(Nirje)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북미의 울펜스버거(Wolfensberger)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정상화이론은 정신지체인의 서비스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으로 시설보호에 대하여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형태와 리듬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상화이론은 사회구조 즉 계급의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프로그램적이고 기능적인 접근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정상화라는 개념을 통해 주류사회와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상화원리는 탈시설의 명분을 제공하고 시설보호에 있어 시설 생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의의를 갖는다.

(2) 모성박탈이론(Maternal deprivation)

아동의 탈시설화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론은 모성박탈이론이다. 모성박탈이론은 존보울비(J. Bowlby)가 1951년 시설보호효과를 추적한 보고서에서 '시설병(hospitalism)'의 원인이 유전이 아니며 모성박탈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보울비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 의해 양육되는 것 자체가 모성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보호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울비의 이론은 전후 아동복지의 방향을 가족 복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시설보호의 위치를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맨 뒷줄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이태수, 2003).

(3) 가정적 처우론

서구에서 보울비의 이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탈시설화의 논의를 부추기는 가정적 처우론이 진전되었는데 크게는 보호형태에 따른 '소숙사제도론'과

3) 1948년 12월 10일 유엔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채택.

보호기술에 따른 '사회사업의 도입과 집단형성론, 치료적 처우론'등이 제기되었다. 이들 이론은 시설병의 원인을 대규모 집단 육아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시설의 운영구조를 소숙사형태로 가급적 가정과 같은 형태로 쪼개거나 보육사 등의 양육자의 사회사업 기술에 변화를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숙사제도(cottage)는 10여명의 아동들을 한단위로 하여 독립된 생활공간을 마련해 준다 하여도 이미 현관문을 나서면 마주하는 같은 처지의 원생들과 자신들을 둘러싼 큰 울타리, 일반 주택과는 다른 유별난 건물과 시설을 통해 아동스스로 남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도 신고시설을 중심으로 소숙사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대규모 집단수용의 상황보다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시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분리와 낙인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02년 이후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의해 전환된 시설의 경우다. 미신고시설 양성화과정에서 지원비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시설 대부분은 그나마 소숙사제도 조차 반영하고 있지 않다.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인권상황 실태조사 대상시설중 정부지원금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시설중 소숙사제도를 반영한 주거형태를 취한 경우는 단 1곳도 없었다. 이들 시설들에 건물 신개축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소숙사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주거형태의 시설들이 대거 새롭게 확충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4) 탈시설화의 추진과정

1950년대 전후를 거쳐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탈시설화는 언론과 관련문헌에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 영향, 점증하는 시설보호비용, 사회과학, 심리학 등 관련 의학 분야의 진전, 시민권(인권)운동의 진전, 이용자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에 따라 1970년대 들어 관련법들이 전면 제·개정되면서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탈시설화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만성장애인들은 시설의 수용보호 생활을 떠나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교정과 같은 영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된 탈시설화는 입원환자의 감소, 입원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

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시설의존으로부터의 탈피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탈시설화는 국가와 지방정부에 시설보호에 따른 복지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여 폐해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손상 장애인들의 경우 탈시설화 정책은 적절한 주택이나 지역사회 환경상의 보완과 수정, 그리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태도와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퇴원 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 보호자의 보호부담 증대와 회전문현상(Revolving Door Phenomenon)으로 비유되는 재입원화, 전이시설화(Transinsinstitutionlaization), 지방재정부담의 가중, 부랑인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탈시설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라기보다는 탈시설화를 재정감축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게 추진한 추진과정상의 문제이거나 탈시설화를 인권을 존중한 지역사회중심의 다른 방식의 지원방식이 아닌 방임의 형태로 인식한 탓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탈시설화는 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지원을 통해 탈시설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아동의 탈시설화

아동의 탈시설화는 20세기 초반부터 기아나 아동 및 방임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위탁가정보호제도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설보호 중심에서 위탁가정보호 중심으로의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입양아동을 위한 영구가정찾아주기 움직임과 병행되어 나타났다 미하원의 조사(1992)에 따르면 1988년 452,381명의 아동이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2년에는 위탁가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가 272,000명이던 것이 1972년에는 319,800명에 달했으며 1977년에는 500,000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1983년에는 269,500명으로 감소했으며 1991년에는 다시 429,00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입소기간은 5년 이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1982년 18.2%에서 1988년 1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미하원, 1992, 전재희 재인용) 18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이용비율은 1933년에서 1973년 사이 48%나 감소하였다(NASW, 1995;709, 전재일 외, 2003 재인용).

3. 동복지시설과 시설보호 아동 실태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인권상황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직까

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99년부터 추진되어 2001년에서야 처음 실시된 사회복지시설평가와 2005년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된 '아동복지시설인권지표 개발 연구'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평가와 지표는 평가문항과 지표개발 단계에서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측정과정에서도 기관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설운영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평가 내용도 주로 물리적인 환경과 프로그램과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어 아동의 생활실태와 인권상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시설 생활 아동의 관점에서 조사된 연구는 1997년 함철호, 이태수, 이용교에 의해 소규모공동생활가정의 아동 254명과 대규모법인시설의 아동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된『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로 진행된『장애인생활시설인권상황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의 수용상황이 생활인의 관점에서 일부 드러났다.

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5년 기준 한국의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신고시설 1,213개 시설에 86,11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외 파악된 미신고시설 973개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양성화결과 보도자료, 2005.7.26). **이 중 아동복지시설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신고시설 279개 시설에서 19,01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31곳(2003년기준)의 파악된 미신고아동복지시설이 추가로 존재하고있다. 미신고시설의 경우 평균 수용인원이 약 15명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보호아동수는 약 2만1천명에 달한다.** 나아가 005년 문제가 된 미신고아동양육시설인 '수경사'와 같이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미신고시설로도 파악되지 않는 시설을 합하면 시설보호아동은 2만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수용아동은 90년대 들어 지역복지의 도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늘어나 최근까지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이혼,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과 미혼모아동의 발생이 증가[4]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아동양육정책이 시설보호기조에서 탈시설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2004년 기준 발생 요보호아동 9,393명중 4,782명의 아동이 시설수용되어 약 51%의 과반수 이상의 아동이 시설보호되고 있는 상황으로**

4)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발생유형을 새로이 범주화한 2000년에 비해 2004년에 이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은 143.5%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자료출처: 아동백서 2006).

시설보호 의존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해 양육시설(영아시설, 육아시설 포함),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정원은 2003년에 실시된 사회복지시설평가결과 평균 88.44명이며 평균수용인원은 67.59명으로 정원의 76.42%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시설의 종사자현황은 법정직원수대비 현직원수비율이 아동양육시설 82.29%, 아동직업훈련시설 106.67%, 아동보호치료시설 94.54%, 아동자립지원시설 92.38%, 아동일시보호시설 82.95%, 아동영육아시설 92.08%로 나타났다.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파악된 자료가 없으나 직원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적절한 직원수의 부족은 업무과중과 소진으로 이어져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아동학대 발생의 구조적 원인중 하나다.

〈표 1〉 아동복지 시설 현황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보호아동수	비고
아동복지시설	279	8,026	7,831	19,014	
아동양육시설	239	3,507	3,270	17,675	
아동일시보호시설	11	3,266	3,271	432	2004년 연말기준
아동자립지원시설	13	79	77	77	
아동직업훈련시설	4	87	115	130	
아동보호치료시설	6	334	331	376	
장애영유아시설	5	-	-	291	

※ 자료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표 2〉 총 아동인구수 대 시설보호 아동수 (일본 대 한국)

	총아동인구	시설보호아동	비율(%)
일 본	35,668,000	31,315	0.09
한 국	17,223,000	27,047	0.15

※ 자료출처: 김석산, 1985

〈표 3〉 아동양육시설수 및 보호아동 현황(1990~2004)

구분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보호아동수	비고
1990	223	2,226	3,048	20,147	
1995	215	1,409	2,383	15,105	
2000	235	3,855	3,988	16,293	
2001	238	5,380	4,176	17,437	
2002	239	3,482	3,577	17,342	
2003	239	3,538	3,443	17,437	
2004	239	3,507	3,270	17,675	

〈표 4〉 요보호 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1990~2004)

연도	계	발생유형					보호내용					
		기아	미혼모 아동 등	미아	가출아	빈곤, 실직, 학대 등 기타	시설보호			위탁 보호	입양	연고자
							아동	장애	미혼모			
1990	5,721	1,844	2,369	360	1,148	-		3,734		1,134	853	-
1992	5,020	1,481	1,813	241	1,485	-		3,122		1,212	686	-
1993	4,451	1,330	1,904	137	1,080	-		2,940		943	568	-
1994	5,023	1,386	1,781	192	1,664	-		2,953		927	760	383
1995	4,576	1,227	1,285	149	1,915	-		2,819		505	472	780
1996	4,951	1,276	1,379	189	2,107	-		3,161		727	479	584
1997	6,734	1,380	1,825	342	3,187	-		3,917		1,209	898	710
1998	9,292	1,654	4,120	277	3,241	-		5,112		2,353	1,284	544
2000	7,760	1,270	2,938	144	3,363	-		4,453		1,406	1,337	564
2001	12,086	717	4,897	98	728	5,646	6,171	41	62	3,090	1,848	874
2002	10,057	634	4,337	74	749	4,263	4,547	57	59	2,177	2,544	673
2003	10,222	628	4,457	79	595	4,463	4,747	42	35	2,392	2,506	500
2004	9,393	481	4,004	62	581	4,265	4,680	38	64	2,212	2,100	299

※ 자료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2) 시설보호아동의 인권 현황

시설보호아동은 생활환경이 일반가정에 비해 열악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의 정서적 불안정, 애정결핍 등으로 학업부진(하정숙, 1999, 하승민 2002에서 재인용)을 겪고 있다. 또 시설퇴소후 자립지원 부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중 특히 참여권의 보장이 취약하고 시설의 아동권리보장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이용교외, 2005).

시설보호아동의 주요 인권문제는 ▲현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퇴소과정에서의 아동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의식주 등 시설내 생활환경의 열악함, ▲지역사회로 부터의 분리된 환경과 낙인, ▲시설안에서 벌어지는 학대, 성폭력·폭행·강제노역·학대·종교강요 등의 인권침해, ▲권리리구제수단과 의사표현기회의 부족 등의 인권침해 상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아동의 의사와 무관한 시설 입퇴소 결정과정

아동복지법은 제 10조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보호조치의 하나로 아동을 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시설입소여부와 시설선택의 과정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주거지를 정하고 보호방식을 정함에 있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 장애인생활시설실태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서 아동을 상대로 '시설선택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묻거나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소개를 받았는지?'에 대해 응답 아동 모두가 사전 설명과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보호방식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지침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에서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 관할 공무원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시설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의식주 등 시설내 생활환경의 열악함

함철호외의 조사결과 시설의 의식주등 생활환경에 대해 대규모법인시설 아동은 25%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방 하나에 몇 명이 살면 좋은가? 에 대해서 양집단의 아동 모두 89.3%가 5명 이하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동이 방 하나를 5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 시립시설인 ㅅ시설의 경우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건물이나 병원과 같은 형태의 복도형으로 길게 늘어진 방 하나에 20명이상의 아동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 아동 대부분은 개인 컴퓨터와 책상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전화기 등의 통신수단의 사용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신고시설의 경우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비닐하우스 또는 콘테이너 박스를 개조하거나 폐교 등을 활용한 건물 또는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남은 음식을 먹어가며 근근이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문제시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인언어치료원, 바울선교원 등의 대다수 미신고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객관적인 실태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보호비용은 신고된 법인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약 연간 1천만원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적은 시설운영비와 후원금에 대한 횡령과 착복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람복지재단의 경우 산하 11개 시설중 1개 시설에서만 이사장이 27억을 횡령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에바다복지재단, 청암복지재단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미신고시설의 경우 회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그나마도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 감수성의 부재로 열악한 시설상황이 방송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후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3) 집단생활과 종사자의 부족

함철호외의 조사결과 “이집식구 중에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에 대해 법인시설아동의 62.7%가 “없다”고 응답했다. 종사자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아동은 적절한 지원과 정서적 유대를 맺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종사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장 1인 또는 원장가족과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지역사회로 부터의 분리된 환경과 낙인

시설수용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보편적인 주거환경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분리적 환경에 따른 낙인, 위축감, 사회성 결여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대전의 시설실태 조사결과 시설의 지리적 위치는 15.4%가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주택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활아동이 지역의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유로운 입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5) 성폭력 · 폭행 · 학대 · 체벌과 징벌 · 사생활의 제한 등 인권침해

최근 문제가 된 광주의 청각장애인 시설 인화원의 경우는 시설 종사자와 이들을 모방한 남학생들에 의해 청각장애가 있는 시설수용 여아들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시설내 성폭력과 폭행, 학대 등은 에바다복지재단, 성람복지재단,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수경사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가 구조적이고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법에 따른 아동수용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절한 조사를 촉구했다.

(6) 권리구제수단과 의사표현기회의 부족

시설 입퇴소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의나 불만, 권리침해시 이를 제기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시설수용이후 문제를 호소하거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생활시설등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수단도 결여되어 있어 유명무실하다.

(7) 미아에 대한 불법 수용

매년 수백명에서 1천명 이상 발생하는 미아는 발견 후 경찰서에서 지역의 아동복지시설로 인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신고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아동을 인계받은 시설은 아동의 사진 등 발견당시의 특징을 인터넷에 즉시 공개해 가족을 찾도록 해야 하지만 미인가시설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아동을 잃은 부모가 전국의 시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입소 아동들을 확인하고 있다. 일부시설에서는 정부 등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아를 기아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에게 시설아동들의 정보 공개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보고서). 최근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을 수용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고 수용하는데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8)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방안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이외에도 시설수용아동은 정서적인 박탈감, 사회성의 부족, 학습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 시설보호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상의 문제 등도

심각하다. 또한 입양과 가정위탁이 더욱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의료적 방치, 정신병원에의 장기수용, 교육권의 침해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나 이 역시 실태파악이 되고 있지 못하다.

4. 시설보호아동 관련 탈시설운동과 정책의 흐름

90년대 초반 탈시설화와 정상화이론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사회복지정책은 표면적으로 탈시설화를 표방해왔으나 사회복지시설보호는 오히려 증가되어왔다. 시설의 증가추세는 2002년부터 실시된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과 최근 도입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더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의 경우도 이혼, 파산, 미혼모 등의 급증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증가에 따라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최근 한국에서의 탈시설운동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3년 이후 장애인단체와 인권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등의 연대조직이 결성되어 개별시설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탈시설을 촉구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상적인 탈시설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시설내 인권보장방안 마련과 탈시설화정책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환을 요구하는 당사자와 가족, 인권운동가 등에 의해 청와대와 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부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편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의 강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례로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실종아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선이사파견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2005년부터 다수인보호시설전담팀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와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과 방임이 이루어져온 광주의 인화원에 대해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공익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탈시설화의 개념과 쟁점, 아동복지시설과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실태와 정책흐름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의 50% 이상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수용아동은 열악한 생활수준, 심리적 박탈감, 성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는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인권실태파악을 위한 생활아동의 입장에서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과 운영, 평가 과정에 아동의 참여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양육서비스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이 서비스과정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위원회,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시설보호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접근은 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시설보호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설보호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탈시설화관점을 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소숙사제도 등 시설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정적 처우를 하기 위한 시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나 시설보호가 가지고 있는 낙인과 모성박탈, 지역사회로 부터의 분리에 따른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보호를 대체할 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아동수당 도입

등), 입양과 위탁가정보호의 활성화,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을 해체하고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각각의 주체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시설화의 방향이 아닌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보편적 삶을 살아갈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단체의 육성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평가나 아동인권지표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아동복지현장에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 대부분이 시설운영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주체로 바라보고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민간복지인력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 서비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이의제기절차와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5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5,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결과발표 보도자료(2005.7.)

국가인권위원회, 2006,『아동복지시설방문조사보고서』(비공개)

김석산, 1985, “육아시설 아동의 입소인원 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통원외, 2004,『2004 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평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성균관대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박숙경, 2005, “한국사회의 탈시설・사회복지시설 민주화 운동 분석”(미발표자료)

박숙경, 2005, “미신고복지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 조사결과 보고”,『미신고복지시설내 생활인 어떻게 살고 있나? 미신고복지시설 인권실태 민관합동 조사결과 발표회 자료집』

이배근, “아동의 권리와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고찰”,『국회인권포럼 제1회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1998

이성규, 2003, “시설・탈시설화를 넘어”,『장애와사회』 창간호, 2003, 우경서원

이용교・이명묵・안경순・정경은, 2005,『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

이태수, 2003, “한국의 아동복지와 탈시설화”,『장애와 사회』창간호, 우경서원

이향숙, 2005,『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이혜원, 2006, “한일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사회복지학』 vol 58, no2, 2006.5 pp 167-195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3,『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전재일・이성희・김효원,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정개원, 2003, “맹목적인 탈시설화의 위험성”『장애와사회』창간호, 우경서원

함철호・이태수・이용교, 1997,『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소규모시설 아동과 법인시설 아동간의 태도차이에 관한 연구 -』 하승민, 2002, “아동권리측면의시설보호아동의 현황 분석”,『아동권리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KELLEY JOHNSON, “Deinstitutionalization : the management of rights”,『Disability & Society』, Vol 13, No, 3, 1998, pp 357-387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http://blog.naver.com/chan0109?Redirect=Log&logNo=20025230644

방문조사와 아동인권평가지표로 본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방문조사와 아동인권평가지표로 본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안 석 모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3팀장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담당팀장)

Ⅰ. 방문조사개요
Ⅱ.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내용
Ⅲ. 인권평가지표와 방문조사로 본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인권 상황
Ⅳ. 맺는말

Ⅰ. 방문조사 개요

1. 방문조사의 의의 및 목적

- 일정기간동안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련 법령, 규정 시설생활인의 처우, 생활환경 등 보호시설의 여러 측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 해당시설과 관계기관 등에 개선을 권고하며,
- 권고의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 증진 및 침해예방에 기여(**인권교육의 기회 동시제공**)

○ 시설환경이 **국내적 및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시설생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 받으면서 처우되고 있는지 현지 방문을 통하여 확인 (궁극적으로 시설생활인의 처우 및 시설환경 개선에 기여)**

○ **보호시설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독립적인 외부감시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 **시설 및 관계당국과 대화 촉진** : 방문결과에 대하여 관계당국과 **해당시설의 책임자간 대화를 통한 시설환경 개선에 기여**

2. 방문조사 강화배경

○ 2005년에 시작된 2기 위원회는 1기에서 치중했던 자유권 침해를 구제하는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활동 강화를 목표로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3년 동안 수행하지 못했던 보호시설들에 대한 조사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다수인보호시설 중에서 정신보건시설을 제외한 노인, 아동, 장애인, 성매매피해여성, 부랑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그 특성상 생활자들의 진정이 전무했거나 손가락으로 꼽는 정도였다. 따라서 이들 시설들에 대한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조사와 지도를 통해 인권침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권리상황을 점검하기위하여 아동양육시설 등을 방문 조사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가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함.

3. 방문조사관련 법적 근거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더라도 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금, 보호시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제2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4항)**

○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제5항)

나.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 **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 및 국제적 기준을 최초로 규정하고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

○ **1989년 채택된 아동권리협약, 1990.9.2일 협약 발효**
(우리나라는 1990년 서명, 1991년11.20일 비준하여 1991년 12.20일 발효)

○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진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음** (협약 제 25조)

-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권리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방문 조사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임**

다. 아동복지법, 동법 제30조 (조사등) : 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사나 질문 등

4. 위원회 조사대상

○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 국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 **구금시설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시설과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 외국인 보호소로 규정하고 있음
- **다수인 보호시설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 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 ・ 그 외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등**

Ⅱ.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내용

1. 인권평가지표 개발 필요성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불충분 하였다**

○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아동을 보호 양육할 능력이 없는 환경에 처한 아동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 인권기준에 맞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인권지표 개발이 필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광주대(책임연구원, 이용교 사회복지학 교수)에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의뢰해 아동복지시설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 **아동인권평가지표는** 국제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의 내용에 맞게 개발하였다. 이로서 궁극적으로 **아동인권평가지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인권수준을 증진시키고**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와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표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인권평가지표 활용계획

○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인권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시 아동인권 평가도구로 활용하고,** 시설방문조사 중 대한 인권침해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임

○ **시설아동의 인권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지표로 활용**

- 전국의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에 보내서 자체 평가후 제출토록 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정책개발을 추진
- 금년도 추진내역 230여개 아동시설에서 자체평가후 회신, 현재 통계처리중임.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봄
- 시설측에서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줄 것을 당부

○ **아동인권에 관한 관심과 아동인권 교육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임**

- 미비한 사항, 상황변화 등 지표 수정필요성이 있는 겨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할 것임

3.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1)]

○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리 등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협약은 4개의 일반원칙을

1) 국가인권위원회. 2005. 유엔인권해설집 (아동의 권리)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모든 국가는(회원국)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아동, 또는 그의 부모 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등에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평등권)
- **최선의 이익의 원칙(제3조)**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 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의견존중의 원칙(제12조)** :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는 위의 4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2)]

-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가정환경과 대리보호를 받을 권리** (부모로부터 비분리,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 요보호아동 지원, 양육지정아동에 관한 보호, 생활보장권, 부모역할 대리 등),
  - **기본적 건강과 복지에 관한 권리** (양육지원, 건강의료지원, 사회 보장, 생명권 등)
  -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관한 권리** (피 교육권, 휴식·여가권 등)
  - **특별보호조치** (난민아동보호, 노동착취, 마약, 성적학대로부터 보호, 고문·사형금지 등)
-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
  - 신분보장, 의사표시권, 표현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정보접근권 등

2)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대비는 : **이혜원, 200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267쪽에서 인용**

4. 아동복지시설 인권지표 내용[3)]

가. 인권지표 구성내용

○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아동권리보장체계 등 5개 영역으로 대분류 할 수 있으며,**

- **아동의 생존권에 관한 조항**에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받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교육을 받을 권리, 집과 양부모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생존은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 된다. **생존권 관련 지표는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보건, 안전 등 5개 중분류 영역아래 22개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협약은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고 착취에 대한 보호, 위기와 응급상황에서의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호받을 권리지표는 입소시의 준비, 시설에서의 아동보호, 체벌과 문제행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부모와의 관계증진, 귀가·퇴소와 사후지도 등 6개 중분류 영역아래 2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동의 발달권은**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 교육과 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발달권 중에는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접근권,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동은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누려야만 성인이 된 이후에 직업 활동 등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다. **아동발달권 지표는 교육받을 권리, 풍부한 인간관계, 문화적 권리 등 3개 1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동의 자유권·참정권은 아동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적당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

3) 국가인권위원회, 2005.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마련을 위한 연구(연구용역보고서). pp. 42~58참조

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아동의 참여권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아동의 자유권·참정권관련 지표는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사생활의 권리, 용돈관리와 아르바이트, 시설운영에 참여, 지역사회와 관계형성) 5개 중분류 아래 1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동의 권리보장체계는**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인권교육, 직원의 권리상황, 투명한 시설운영 등의 5개영역으로 중분류 아래 1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인권평가지표와 방문조사로 본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인권 상황

1. 인권평가지표로 본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인권 상황 (요약)[4)]

가. 생존권 관련(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보건, 안전)

ㅇ 식생활

1-1-1. 시설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근무하는지 여부 96%

1-1-2. 아동의 발달단계와 기호에 따른 식단이 준비되는지 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에게 의견조사를 한 후에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식단을 짠다.	43.8	12.5	75.0	50.0
아동의 기호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식단을 짠다.	40.6	75.0	25.0	50.0
가격을 고려하여 식단을 짜고 가끔씩 아동의 의견을 참고한다.	15.6	12.5	0.0	0.0

4) 前揭書 pp. 59~123 (설문조사 결과 참조).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Homepage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정책→ 인권상황 실태조사 83번 참조 (전문게재). 2006년도에는 약 230개 시설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 통계작업중임.

1-1-4. 아동이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거나 정한 시간이 지나도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68.8	50.0	100.0	75.0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면 아동이 식사를 직접 차려먹게 한다.	15.6	37.5	0.0	
식사시간이 지나면 다음 식사시간까지 기다리게 한다.	3.1	12.5	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12.6			25.0

ㅇ 의생활

1-2-1. (중학생이상의) 아동은 본인의 옷을 어떻게 구입 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 본인이 옷가게에서 직접 선택하여 구입한다.	46.9	12.5	50.0	0.0
아동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 직원이 구입하거나, 아동과 동행하거나 아동이 직접 구입한다.	37.5	75.0	50.0	50.0
직원이 아동의 연령/성별을 고려하여 구입한다.	15.6	12.5	0.0	50.0

1-2-2. 아동이 옷이나 소지품을 정리하기에 옷장이나 사물함이 충분한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개인별 옷장과 사물함에 소지품을 정리한다.	65.6	62.5	50.0	50.0
아동이 사용하기에 좁은 개인별 옷장과 사물함에 소지품을 정리한다.	18.8	37.5	50.0	50.0
아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옷장과 사물함에 소지품을 정리한다.	15.6	0.0	0.0	0.0

ㅇ 주생활

1-3-1. 아동은 자신의 입소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거의 모든 아동이 본인이 선택한 시설에 입소한다.	6.3	37.5		0.0
절반정도 아동은 본인이 선택한 시설에 입소한다.	3.1	62.5		25.0
시/군/구청이나 아동복지센터(아동상담실)에서 아동의 입소시설을 결정한다.	90.6	0.0		75.0

1-3-3. 아동이 거주하는 숙사의 형태와 구조는 어떠한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일반 주택가에 위치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9.3	75.0	50.0	0.0
30명 이상이 사는 건물이면서 내부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구조로 되어 있는 소숙사 구조이다.	46.9	25.0	25.0	0.0
30명 이상이 사는 건물이면서 기숙사형태의 대숙사 구조이다.	43.8	0.0	25.0	100.0

1-3-5.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 책상이 있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모든 학생은 개인별 책상이 있다.	40.6	87.5		25.0
중고등학생 등 일부 학생은 개인별 책상이 있다.	40.6	12.5		50.0
개인별 책상은 거의 없고 공부방 등에서 공동책상을 사용한다.	18.8	0.0		25.0

ㅇ 보건

1-4-1.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28.1	12.5	75.0	25.0
간호사는 없지만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37.5	87.5	25.0	50.0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없다.	31.3	0.0	0.0	25.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1			

1-4-4. 아동 개인별 건강관리카드가 있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모든 아동의 개인별 건강관리카드가 상세하게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다.	68.8	25.0	75.0	75.0
모든 아동의 개인별 건강관리카드가 간단하게 기록되고 관리된다.	18.8	37.5	25.0	0.0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12.4	37.5	0.0	25.0

1-4-5. 아동에게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성교육을 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모든 아동에게 연 1회 이상 보건교육/성교육을 실시한다.	90.6	50.0		100.0
일부 아동에게 필요할 때 보건교육/성교육을 실시한다.	6.3	37.5		0.0
정기적인 보건교육/성교육은 별도로 없다.	3.1	12.5		0.0

ㅇ 안전

1-5-1. 아동 숙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대비시설과 설비는 있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각 숙소에 스프링클러와 2층 이상에 완강기(대피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12.5	25.0	50.0	25.0
각 숙소마다 소화기, 비상벨, 손전 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다.	53.1	25.0	25.0	75.0
각 숙소마다 소화기, 비상벨, 손전 등 중 2개미만 비치되어 있다.	34.4	50.0	25.0	0.0

1-5-3. **아동에게 교통안전교육과 약물오남용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약물오남용교육을 모두 실시한다.	75.0	25.0		50.0
사안이 있을 때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중 하나의 교육을 실시한다.	18.8	12.5		0.0
위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는 못한다.	6.2	62.5		50.0

나. 보호받을 권리 관련 인권평가지표

2-1-1. **입소 전에 시군구청이나 아동복지센터(아동상담실)는 시설 협조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 신병 인수시 시군구청이나 센터측에서 상담한 모든 상담/조사 자료(부모와의 상담한 내용을 자세히 포함한 아동의 가정환경 등이 포함된)와 간단한 기록카드(아동의 신상명세 등이 포함된)를 아동복지시설에 제공한다.	50.0	50.0		25.0
아동 신병 인수시 시군구청이나 센터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간단한 기록카드(아동의 가정환경, 신상명세 등이 포함된)만을 아동복지시설에 제공한다.	28.1	37.5		50.0
아동 신병 인수시 시군구청이나 센터는 아동의 간략한 인적사항만 알려준다.	21.9	12.5		25.0

2-1-3. **아동이 입소초기에 흔히 겪는 분리불안, 박탈감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소아정신과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상담하여 관리한다.	6.3	25.0		0.0
주로 생활복지사가 상담하고 입소아동 초기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9.4	37.5		100.0
담당 생활지도원이 해당 아동을 위로하고 상담한다.	31.3	37.5		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0			

ㅇ 시설에서 아동보호

2-2-2. 아동의 시설생활 만족도조사와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년 1회 이상 아동에게 생활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한다.	62.5	12.5	25.0	50.0
아동에게 생활만족도나 욕구조사를 간략히 조사하지만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지는 않는다.	21.9	62.5	50.0	50.0
아동에게 생활만족도나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15.6	25.0	25.0	0.0

2-2-5. **아동의 욕구, 생애주기, 잠재성을 고려한 개별적 양육계획이** 있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모든 아동에 대한 개별적 양육계획이 세워져 있고, 주기적으로 재사정되어 작성되고 있다.	31.3	62.5		0.0
일부 우수하거나 문제 아동에게 개별적 양육계획이 세워져 있다.	43.8	25.0		50.0
아동에 대한 개별적 양육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21.9	12.5		5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0			

○ **체벌과 문제행동**

2-3-1. 시설에서 직원이 아동에게 체벌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직원이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65.6	50.0	50.0	75.0
직원이 아동에게 체벌하지 말도록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심각한 체벌이 아닌 경우에는 경고에 그친다.	31.3	12.5	25.0	25.0
대규모로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아동에게 체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수용한다.	3.1	25.0	25.0	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12.5		

2-3-2. **시설에서 아동간의 신체적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신체적 폭력 등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고,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화해, 반성문쓰기, 재발방지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68.8	75.0	50.0	100.0
신체적 폭력 등을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시키나,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벌을 서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준다.	25.0	12.5	25.0	0.0
신체적 폭력 등을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시키나, 대규모로 키우는 과정에서 아동간의 폭력은 사실상 불가피한 일로 간주한다.	6.2	12.5	25.0	0.0

2-3-3. 시설에서 아동간의 성추행 혹은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연 1회 이상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혹 사건이 생길 때는 전원조치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도한다.	68.8	50.0	25.0	75.0
필요성이 있을 때 성교육을 실시하며, 혹 사건이 생길 때는 전원조치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도한다.	18.8	12.5	25.0	25.0
심각한 성추행 혹은 성폭력이 아니라면, 상담을 하고 반성의 기회를 준다.	12.4	12.5	50.0	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25.0		

○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2-4-1.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나 방임 등으로 입소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학대나 방임으로 생긴 아동의 '피학대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시설 안에 혹은 밖에 있는 공동생활가정(혹은 소규모 숙사)에서 1개월 이상 적응 기간을 갖게 한다.	9.4	50.0	50.0	25.0
학대나 방임으로 생긴 아동의 '피학대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시설에 잘 적응하도록 관심을 가진다.	50.0	37.5	25.0	50.0
피학대 아동의 상태를 직원이 사전에 인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한다.	40.6	12.5	25.0	25.0

2-4-2.이주노동자의 자녀, 이주민의 자녀, 혼혈아동 등 소수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소수집단 아동에게 언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아동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을 가르친다.	3.1	37.5	75.0	0.0
아동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을 가르치고 소수집단 아동을 배려하게 한다.	9.4	25.0	25.0	0.0
소수집단 아동의 입소가 별로 없기에 아직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	81.3	37.5	0.0	10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6.2			

○ **부모와의 관계 증진**

2-5-1.부모가 있는 아동에게 부모와의 관계형성과 가정복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모든 아동의 부모와 가족관계를 가급적 파악하여 1년에 1회 이상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가능성을 파악하고, 시설 아동의 부모가정 방문을 장려한다.	46.9	87.5	50.0	50.0
일부 아동의 부모와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가능성을 파악하고, 시설 아동이 부모와 전화 혹은 방문을 하도록 장려한다.	43.8	12.5	25.0	50.0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거나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아동과 부모와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9.3	0.0	25.0	0.0

○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2-6-1. 연고자에게 아동을 귀가시킬 경우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귀가의 방법과 귀가 후 지도계획에 대해서 부모와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2년 이상 사후지도를 체계적으로 한다.	9.4	12.5		0.0
귀가에 대해서 부모와 아동과의 상담을 하지만, 귀가 후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지도를 한다.	31.3	87.5		75.0
귀가에 대한 부모/아동상담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후지도는 어렵다.	56.3	0.0		25.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0			

2-6-2. 아동의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취업지도, 금전관리, 음식조리, 이성교제와 결혼 준비 등 자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꾸준히 지도하여 퇴소를 시키고 사후지도를 한다.	25.0	62.5		0.0
취업지도, 금전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만, 퇴소 후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지도를 한다.	37.5	25.0		50.0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퇴소시키지만, 현실적으로 사후지도는 어렵다.	34.4	12.5		5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1			

다. 발달권 관련 인권평가지표

○ **교육받을 권리**

3-1-1. 아동의 **성장 발달 수준에 따른 학습, 사회성 훈련, 정서지도, 놀이지도 등에 대한 개인별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실행 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모든 아동의 성장 발달수준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56.3	62.5		
일부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기/적성이 뛰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지도하고 있다.	15.6	37.5		
아동별로 종합적인 교육계획은 없지만, 학령에 맞게 학교를 보내고 있다.	28.1	0.0		75.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25.0

3-1-5.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인문계 또는 실업계를 본인의사로 선택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문계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68.7	75.0		25.0
아동의 의사보다는 실력을 고려하여 인문계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25.0	25.0		75.0
원장이나 생활지도원의 판단으로 아동의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6.3	0.0		0.0

ㅇ 풍부한 인간관계

3-2-2. 아동과 직원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년 1회 이상 아동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인간관계훈련' 등을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37.5	37.5		25.0
담당 생활지도원이 중심이 되어서 '추억만들기 행사' 등을 통해서 아동과 대화할 기회를 자주 갖는다.	43.7	37.5		75.0
아동과 직원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특별한 활동은 별로 없다.	9.4	12.5		0.0

ㅇ 문화적 권리

3-3-2. **아동은 주말이나 방학 등 특별한 계기에 여가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가정집 아이들처럼 자유스럽게 외출을 하거나 영화구경 등을 하면서 즐긴다.	56.3	12.5		0.0
시설에서 단체로 계획한 영화 관람이나 캠프 등에 참가하여 논다.	43.7	87.5		75.0
별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설에서 지낸다.	0.0	0.0		25.0

3-3-3.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문화접촉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연극, 음악, 체육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활동을 하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갖는다.	62.5	37.5		50.0
연 2회 이상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 연극/영화 관람을 하여 아동의 문화향수능력을 높인다.	34.4	50.0		50.0
주로 시설에서 비디오 등을 시청하면서 대중문화를 감상한다.	3.1	12.5		0.0

3-3-4. 아동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가정집 아이들처럼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게임도 하고 개인적으로 미니홈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한다.	75.0	25.0	25.0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게임 등을 하는 것은 다소 규제를 받는다.	15.6	62.5	50.0	25.0
컴퓨터가 컴퓨터실에만 있는 등 각 숙소마다 있지 않아서, 아동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9.4	12.5	25.0	5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25.0

라. 자유권 · 참여권 관련 인권평가지표

○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4-1-2. 아동은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의 종교생활은 자유이고, 시설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12.5	12.5	50.0	0.0
아동의 종교생활은 자유이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시설 설립자/운영자의 종교를 따르고 있다.	62.5	87.5	25.0	100.0
아동은 시설 설립자 혹은 운영자의 종교에 따라 종교생활을 한다.	25.0	0.0	25.0	0.0

○ 사생활의 권리

4-2-1. 아동의 편지, 이메일 등에 대한 사생활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 윤리규정이 있고, 아동이 직접 편지를 개봉하고 이메일을 쓸 수 있도록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87.5	87.5	25.0	50.0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 윤리규정이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아동은 선별 처리한다.	9.4	12.5	50.0	25.0
문서화된 복무 윤리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설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3.1	0.0	25.0	25.0

4-2-2. 아동은 전화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각 숙소에 전화기가 있어 자유롭게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다.	21.9	62.5		0.0
각 숙소에 인터폰이나 수신전용 전화기가 있어서 아동은 자유롭게 전화를 받을 수 있다.	31.2	37.5		0.0
아동은 사무실 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를 받거나 걸고, 필요한 경우 공중전화기를 이용한다.	46.9	0.0		100.0

○ 용돈 관리와 아르바이트

4-3-1. 중학생 이상 아동은 자신의 저축이나 후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은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을 한다.	15.6	25.0		0.0
아동은 담당생활지도원의 지도를 받아서 통장을 관리한다.	31.3	75.0		25.0
담당 생활지도원이나 사무실에서 아동의 통장을 관리하고, 아동이 원할 경우 생활지도원의 지도를 받아서 출금한다.	50.0	0.0		75.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1			

4-3-2. 15세 이상 아동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선택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은 건전한 아르바이트라면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후, 시설의 지도에 따른다.	43.8	37.5		25.0
아동이 어떤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설의 지도에 따른다.	6.3	37.5		75.0
아동의 아르바이트는 금지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46.9	25.0		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1			

○ 시설운영에 참여

4-4-1. 시설에서 아동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등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과 직원이 참여하는 가족회의나 아동자치회(학생회)에서 생활수칙을 결정한다.	37.5	75.0	25.0	50.0
아동 대표와 직원 대표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생활수칙을 정한다.	28.1	25.0	25.0	25.0
시설장이나 직원이 주도하여 정한다.	34.4	0.0	25.0	25.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25.0	

4-4-2. 시설 내외의 행사에 아동이 참석할 때, **아동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 하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시설 내외의 행사에 참석 여부는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다.	28.1	62.5		25.0
원칙적으로 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하지만, 시설의 방침을 거부하기 어렵다.	59.4	25.0		75.0
주로 시설의 방침에 따라 아동의 행사 참석여부는 결정된다.	9.4	12.5		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1			

○ 지역사회와 관계형성

4-5-2. 시설 아동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아동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주민도 아동복지시설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71.9	12.5	25.0	75.0
지역주민이 아동복지시설의 행사에 참여하지만, 아동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6.3	37.5	25.0	25.0
아동은 지역사회 행사에 별로 참여하지 않고, 지역주민도 아동복지시설의 행사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18.8	37.5	25.0	0.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0	12.5	25.0	

마. 아동권리보장 체계 관련 인권평가지표

○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5-1-1.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인권전문가가 있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변호사, 인권단체활동가, 인권 분야 교수 등이 있다.	15.6	37.5	25.0	25.0
양쪽 중에서 하나에 변호사, 인권단체활동가, 인권 분야 교수 등이 있다.	18.8	12.5	25.0	50.0
양쪽 모두 아직 변호사, 인권단체활동가, 인권 분야 교수 등이 없다.	62.5	25.0	50.0	25.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3.1	25.0		

5-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모든 아동에게 인권침해가 무엇이고 인권을 침해받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떻게 진정할 수 있는 지를 자세히 안내한다.	25.0	37.5	25.0	25.0
인권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고등 학생에 한하여 인권침해가 무엇이고 인권을 침해받을 때 어떻게 진정할 수 있는 지를 안내한다.	59.4	12.5	25.0	50.0
아동에게 인권침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진정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5.6	37.5	50.0	25.0
해당사항 없음/무응답		12.5		

○ **인권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5-2-1. 시설 내에는 아동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지침이 있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시설 내에 아동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고, 이를 직원과 아동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	31.3	37.5	25.0	50.0
시설 내에 아동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지침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미흡하다.	46.8	25.0	75.0	50.0
시설 내에 아동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지침은 아직 없다.	21.9	37.5	0.0	0.0

○ **인권교육**

5-3-1.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아동에게 가르치는지 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년 1회 이상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갖고 아동에게 가르친다.	12.5	12.5	75.0	25.0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간략히 가르친다.	40.6	87.5	25.0	75.0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아직 가르친 적이 없다.	46.9	0.0	0.0	0.0

5-3-2. 직원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과 아동권리 옹호방법 교육여부

	양육	소규모	일시	치료
모든 직원에서 년 1회 이상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아동권리 옹호방법을 교육한다.	43.8	12.5	100.0	25.0
생활복지사 등 일부 직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교육한다.	15.6	87.5	0.0	75.0
아직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	40.6	0.0	0.0	0.0

2. 방문조사 결과 시설보호아동 상황[5] (개선 · 보완이 필요한 내용)

○ 입소시 아동과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 입소 전 시군구청, 아동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 방안
○ 간호사(간호조무사), 심리치료사 등 법정인력기준 준수
○ 정기적 건강검진 및 개별 아동건강관리에 좀더 역점
○ 교통안전교육, 약물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강화(의무적 교육)
○ 입소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 전문적 상담 및 관리
○ 아동 생활만족도나 욕구조사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시설운영에 확대반영**
○ 체벌, 구타행위 엄격히 금지(미온적 조치가 재발이 원인)
- 아동성추행, 아동 구타, 과도한 체벌은 아동학대로 고발 등 엄중조치필요
○ 소수집단 아동 입소대비책 수립 필요
○ 가정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생긴 정신질환(피학대증후군 등) 조기치료(지역정신보건센터)
○ 부모와의 관계 형성,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모임, 방문 장려
○ 아동과 인근 주민과의 교류 확대방안 모색
○ 귀가조치후 아동생활실태 확인 및 필요시 구제방안 강구 필요
○ 퇴소후 자립을 위한 대책 확대 방안 강구
○ 아동성장발달 수준에 따른 개인별 양육 및 종합교육계획 적극적 수립 시행
○ 인문계, 실업계 선택시 아동의 선택권 확대 반영
- 대학의 장학제도 확대운영제도 홍보 및 향학 동기부여
○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특별 활동 확대 개발 시행
○ 인터넷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관심 필요

5) 2005년 설문조사 및 2006년 방문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임.

○ **아동에게 종교선택, 종교활동 자유의 권리보장 확대 필요**

○ **통신(편지, 전화)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므로 제한은 법적근거가 필요**

- 행정편의적인 일률적인 제한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음

○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 오용되지 않도록 좀더 많은 주의필요

○ 아동의 자치회운영, 시설운영위원회에 참여 등에 대한 관심 확대

○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 진정제기 방법 등 교육 확대 필요 등**

-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교육을 아동자신, 타인, 직원을 위해 적극시행

○ 시설내 아동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지침제정 및 시행**

○ 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조건, 급여, 복지 개선 방안 강구

○ 책상 없는 아동에게 공부할 책상, 부족한 사물함 확대 지급 필요

○ 시설에서 정한 시간에 일제히 기상, 취침에 대한 합리적 개선

○ 대규모 수용시설→ 소규모 생활시설로, 집단생활→ 개인생활로,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된 생활로, **가장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

○ 치료보호시설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 운영방안 강구

○ 이사회나 운영위에 아동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필요

○ 후원금관리, 사용내역, 회계사항, 시설운영에 관한 정보 등 공개 및 공지

○ 아동복지시설, 관계부처,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Ⅳ. 맺는말

○ **인권보장이란 인간이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 존중되는 것**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잃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 중에서 복지인권을 의미

○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어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실천**이 사회복지

○ **인권과 사회복지는 인간존중·인간애, 인간의 평등성,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율성과 생존권을 충족하고자 하는 권리가 사회복지이며, 이것을 충족해주는 이념이자 규범을 인권으로 볼 때, **사회복지는 인권을 실천하고 구체화 하는 것으로 봄**[6)]

- **사회복지는 인권의 이상을 실현하는 실천분야이고, 인권의 옹호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함.**

○ **시설보호아동의 장래는 시설직원에 달려 있음**

- 그동안의 헌신적 **노고와 희생에 존경과 경의를 표함**
- 시설보호 아동들은 보호시설 직원들의 **사랑을 먹고 배우며 성장**
- **아동을 단지 보호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한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
- 미래의 꿈나무들을 더욱 더 잘 양육하고 보호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

○ **다수인복지시설이 인권옹호전문기관으로**

- 아동복지시설이 대표적인 아동인권옹호전문기관으로,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은 인권옹호전문가로 활동하기를 바람
- 저임금, 격무에 시달림, 높은 이직율,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 등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에도 국가인권위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계당국에 필요한 권고와 협력을 할 것임**

6) 세부내용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JIM IFE, 2001). 기본적 인권으로서 복지권의이해(윤찬영, 2005.5.10) 참조.

아동 ·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권리 이해

아동 ·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권리 이해

이 용 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Ⅰ. 아동의 권리란 무엇인가?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아동도 성인처럼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평범한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은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의 인권이 확인되고 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지만, 아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루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프랑스 사회가 아동을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교육을 한데 대해서 비판하고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고유한 가치와 인권을 주장하였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었는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분명히 하였다.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1976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 선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결정하였다. 국제 아동의 해는 아동의 인권 실현을 촉진할 목적으로 결정되었고, 아동의 권리협약의 채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그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고, 또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접근에 관한 조항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한국 정부는 비준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허가, 상소권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2) 아동권리의 주요 내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과 함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권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발달의 권리 :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보호받을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의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 54개조는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체인 아동의 권리 조항(제1조~제41조), 제2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규정(제42조~제45조), 제3부는 협약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제46조~제54조) 등이다. 그중 제1부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3조)
-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 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인 보장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21조) 등 가정환경보호
-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아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보장권(24조),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18조) 등 제반 아동복지 보장
- 의무교육(28조), 여가와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 난민아동(22조), 전쟁시의 아동(32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과 형사 피의자(40조)가 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 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영유아기에 아동의 권리

영유아기에 있는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
- 낙태를 당한 우려가 있다.

[보호권]
- 미혼모가 출산할 때 국외로 입양되어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수 있다.
- 국내에 입양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어렵다.

- 이주여성 가정에서 태어날 때 '혼혈'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 빈곤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맞벌이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발달권]
- 빈곤 가정의 경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기 어렵다.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참여권]
- 영유아의 의견은 흔히 무시되기 쉽다.

✸ [사례연구] 국내입양의 활성화로 국외입양의 최소화

1) 해당 분야의 실태

- 국가 경제의 상황에 관계없이 매년 4000명 정도의 아동이 새로운 부모를 찾고 있음. 특히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숫자가 매년 2000여 명 정도로 국내 입양보다 많음.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입양 아동수는 6만4천5백5명이고, 국외 입양 아동수는 15만2천7백86명으로 국외입양이 2배가 많음.
  - 1990년에 입양아동 4,609명 중 2,962명(64.3%)이 국외로 입양되고, 2002년에는 4,059명 중 2,365명(58.3%)이 국외로 입양됨.
- 6.25직후 혼혈인을 입양하면서 해외입양이 시작되고, 정부는 입양을 민간입양기관(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함.
  - 입양은 수요자(입양부모)와 공급자(입양기관)가 입양아동을 금전(입양비)으로 거래하는 사적인 일로 전락시킴.
  - 정부는 입양기관에 약간의 보조비를 지원하고, 입양비의 공시가를 지정해주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 입양기관의 운영은 거의 국내 입양부모가 내는 200만원 가량의 입양비로 이루어지고 입양기관은 수수료가 많은 해외입양을 중단하기 어려움.
- 국내입양 활성화의 걸림돌은 혈통주의 관습으로 인한 비밀입양임.
  - 공개입양이 차츰 늘고 있긴 하지만 부부만(12.9%), 일부 가족만(22.8%), 가족만

(38.2%) 아는 비밀입양이 대부분이고, 공개입양은 26.1%에 불과함.

2)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정책

- 한국정부는 기존 입양특례법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함.
-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매우 미미하고, 입양후 사후관리는 사실상 6개월 후에는 종료됨.
  - 더욱이,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은 해외 입양기관에 위임되어 있고, 성장한 국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홍보성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양부모에게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을 지원함.
  - 2005년부터 의료급여 1종 서비스를 주기로 한 것은 전향적인 정책임.
  - 2004년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서, 국내 입양된 18살 미만의 어린이 3만 1700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됨.
- 인천광역시가 2004년부터 입양된 영아 한 명당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씩 3년 동안 모두 4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입양을 촉진하려는 시도임.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8. 위원회는 위와 같은 권고를 재반복한다.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겼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권고들과 이번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유보

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9조3항, 21조 a항, 40조 2-b-v항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유죄를 선고받은 청소년의 항고권에 유념하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협약 40조 2-b-v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1993년)에 부응하여 협약 21조 a항과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상호면접권을 보장하게끔 민법을 신속 개정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

력을 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입양

42. 위원회는 보편적인 부정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허가나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이 아동최상의 이익 또는 (적절한 경우)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입양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996년 1차 권고에서 언급했던 우려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차 권고를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21조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법률을 개혁할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입양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

b)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라.

4) 입양정책에 필요한 정책제안

- 반드시 국가 혹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만이 입양을 알선하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유보조항을 없앰.
-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입양수속비를 양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 전체 아동 중에서 국내입양의 비율을 현재의 41.8%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향시킴.
- 입양인을 위한 이중호적제도 혹은 친양자제도의 도입.
-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을 축소.
-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함.

3. 초등학생기에 아동의 권리

초등학생기에 있는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

- 빈곤가정의 경우에 결식의 우려가 있다.
- 빈곤 가정의 경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 통학길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

[보호권]

- 신체적 학대와 성추행에 노출될 수 있다.
- 방과후에 방임으로 각종 문화적 경험에서 박탈당할 수 있다.

[발달권]

-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교육기회 박탈- 정신지체 등의 이유)
- 부모의 이혼시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받기 어렵다.

[참여권]

- 부모의 이혼시에 어느 쪽 부모와 살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명권이 없다.
- 이혼시에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이 없다.

✸ [사례연구] 이혼가정의 아동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해당분야의 실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부모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혼자녀의 수도 급증, 2002년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에 의하면, 이혼건수는 1970년 11,600건, 1990년 45,700건, 2000년 120,000건, 2002년 145,000건에 이름. 전체 이혼 건수 중 협의이혼은 121,863건으로 전체 이혼의 83.8%에 이르고, 재판이혼은 22,711건으로 15.6%, 미상은 750건으로 0.6%를 차지함.
- 이혼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101,351건으로 전체 이혼가정의 69.7%이고, 그 중 2명이 50,826건(34.9%)으로 가장 많고, 1명이 43,650건(30%), 3명 이상이 6,875건(4.7%)의 순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41,895건(28.8%)으로 나타남.
- 여기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1,351건의 이혼건수에 자녀수를 곱하면, 최소한 16

만 여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이처럼 이혼 가정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인권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부부는 이혼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지만, 자녀는 부모의 친자관계 혹은 양육자와 피양육자 관계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상황, 양육자의 결정 그리고 이혼후의 경제생활에서 아동의 인권이 경시되고 있음.
-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모 68.3%, 부 30.7%로 모로 지정된 경우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재판상 이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모 61.1%, 부 27.8%의 비율을 보임.
- 이혼가정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맡게 된 가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이혼 여성들의 경우 육아나 가정을 위해 자신의 일을 중단했던 상태에서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신현숙 외(2001:3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 조사 대상 이혼가정의 아동들이 이혼으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인 26.5%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여성민우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지지기반의 문제로 다수가 친인척과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1/3이 현재 일자리를 가지지 않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여성의 노동현실로 가사와 생계를 동시에 꾸리는 것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함.
- 뿐만 아니라 80%가량의 한부모가 저소득층 기준이 되는 4천 5백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1] 이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이혼가정의 60%이상이 자녀의 양육을 여성이 책임지고 있지만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취업 또한 매우 제한적이거나 혹은 임금수준이 열악한 일용직에 종사하는

1) 이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곽배희(2001:13)의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사대상 588명 가운데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이혼가정이 38.5%에 불과했고, 26.9%가 51~100만원, 그리고 전체 이혼가정의 절반이 넘는 53.8%가 100만원 이하여서 이혼 여성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녀의 건강한 양육에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이혼가정 아동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정 아동보호정책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 이혼관련 조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혼가정의 아동이 겪는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나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임. 특히 이혼가정이 당면한 직접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육비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해서 이혼가정의 아동이 적적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혼가정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들을 보면, 첫째, 이혼시 당사자의 협정 또는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양육책임의 중요한 기준을 부모의 재정적인 측면에 두고 있어 자녀의 복리가 간과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이 같은 법률적 태도는 이혼과정에서 양육권자 결정시 '자녀의 복리'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 상반되는 것임.
- 두 번째는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환수방법과 함께 법적 제재 장치가 없음. 자녀양육의무를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곤란과 함께 이혼가정자녀의 복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임.[2)]
- 마지막으로 양육비의 산정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혼가정의 자녀양육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하는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양육비의 액수와 합의나 판결로 책정된 양육비의 액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3)]. 현재 우리 법원은 자녀양육비의 산정을 가정의 수입정도나 재산의 정도 등에

2)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가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정도로 그 이행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것 외에 실제로 이행하느냐 여부는 법원과는 무관한 일이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윤덕경 · 장영아, 2002:42)

3) 이혼가정에 대한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양육비가 합의나 판결로 책정된 경우 '월 21~30만원'이 가장 많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는 월 31~40만원, 중고등학생은 월 61만원 이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월 15만~30만 원 선에서 인정해주고 있음.

-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법원에 양육비 신청을 해서 재판을 통해 실제 양육비를 지급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주요 외국의 관련 제도

❍ 일본은 이혼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은 이혼시에 양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결정된다고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혼의 9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을 정확히 결정한다고 하는 제도적 보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 수입, 재산분할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정하고 있고 그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하거나 정기금으로 할 수 있음.

❍ 일본은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이혼, 심판이혼, 판결이혼 나아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서나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함.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통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확보 기능을 가진 이행권고, 이행명령, 기탁의 제도를 규정하여 이혼가정을 보호하고 있음. 이외에도 생활이 곤란한 이혼가정을 위해 아동부양수당과 모자복지자금대여,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이혼가정의 아동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은 양육비 확보를 위해 1998년 보좌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 대해서는 물론 그 밖의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에 대해 보좌로 인정된 아동복지기관이 자녀를 대리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가정을 위해 '양육비선급제도에관한법'을 제정하여 당장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우선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법원의 양육비 액수가 지극히 비현실적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곽배희, 2001:14).

❍ 영국은 양육비를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전배우자의 부양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아동보조청이 양육비를 대신 받아 주는 등 법적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이혼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독일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도 1991년 제정된 아동지원법은 상세한 규정과 수식을 포함하여 정확한 수학적 공식에 따라 산정되어 정확성과 획일성, 공평이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에 의한 양육비 산정과 함께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의무위반자에 대해 최고 6주간의 구금형이 부과하는 등 강력한 형사권의 발동을 통해 양육비의 미지급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고, 이혼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함께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음.

❍ 미국은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의 자에 대한 임금원천징수 방법을 입법화하여 양육비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정기적인 청구, 체불통보, 재산압류, 자산압류 및 매각, 운전면허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면허증 취소, 연방구속, 벌금 등의 강력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음. 아울러 양육비 산정과 관련해서도 1975년 사회보장법에 아동부양이행강제제도를 신설하여 양육비 산정을 입법화함.

4) 이혼가정의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가)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 의무화

❍ 이혼시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이혼 신고서에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내용, 예를 들어 양육자는 누가이고, 양육비는 누가 얼마정도 지급할 것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당사자간 이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함.

❍ 재판상 이혼 시 친권, 양육권 등 자녀문제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자녀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협의든 재판이든 결정된 친권자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필요하다면 이혼재판에서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 판결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구체화되어야 함.

나) 양육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

❍ 이혼가정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여러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양육비가 산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이 정한 구체적 기준에 의해서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 요구 됨.

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방안의 마련과 함께 양육비 선급제도의 도입

❍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도로 지급 받고 있는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양육비지급에 대한 이행감독제도의 신설과 함께 양육비 지급의무자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형사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함.

❍ 양육비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혼가정의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급제도를 도입하고 이혼시 당사자가 법원에 양육비를 공탁하게 하고 자신들이 양육할 때는 공탁금을 회수하여 양육토록 하기 위한 양육비 공탁제도를 도입해야 함.

라) 이혼가정의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복지정책의 수립

❍ 이혼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차원의 복지대책들이 대부분 절대빈곤층에 한정되어 있어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혼가정의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학비와 아동양육비의 상향조정, 상담 및 심리 프로그램,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의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이혼가정을 위한 별도의 아동수당 및 소득보조제도의 신설, 이혼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총괄적 상담 및 지속적 지원체계의 마련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사례연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실태

- 2000년 7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하고,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함.
  - 동 법은 아동학대 관련 16개 조항을 삽입하여 아동 보호체계를 처음으로 명시하였음.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아동학대 처벌, 교육적 방임, 피학대 아동의 전학, 학대자 강제입원조치,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와 관련된 조항임.
-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하 아동학대 상담센터라 칭함.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설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4호에 규정됨.
  -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 설치를 명문화 함. 1391 긴급전화는 아동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1391의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음.
  - 아동보호 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중앙 아동학대 상담센터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연구 개발된 자료들이 지방아동학대 상담센터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전국 차원의 아동학대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과 아동학대 정책제언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1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됨.
  - 2004년 7월 현재 19개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01년 10월 18일에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세워지고, 2004년 5월 전국에 국고지원을 받는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 8개소가 추가신설 됨.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법인자체 부담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도 5개소 신설되어 총 13곳의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신설됨. 2004년 7월 현재 전국에 27개소의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운영하고 있음.
  - 각 아동상담센터는 학대 아동의 발견, 신고 접수, 개입, 현장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별, 치료 및 보호, 종결, 연구조사,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담(동법 제14조 제1항)하는 직접적인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임.

·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직접적인 아동보호 서비스 즉, 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른 행정 부서와의 업무조직과 협조안을 마련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의 전반적 방향을 제안하여 각 지방 아동상담센터가 구체적인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업무를 총괄
·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의거 잠재위험 가정 및 피학대 아동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학대의 재발방지와 학대예방체계를 구축. 이외에도 24시간 신고전화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일시보호 결정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지방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주어야 함. 따라서 매월 지방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매월 사례현황을 보고해야 함. 그리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행함.
· 아동학대 상담센터의 운영인력은 전국에 총 162명으로 실제 아동보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원은 각 기관별로 7-8명임.
· 중앙아동학대 상담센터 및 각 지역 아동학대 상담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아동복지법 제 31조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규모 아동학대 상담센터는 정부가 지정한 8곳만 국고지원을 받고 이외의 법인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센터는 자체 예산에 의해 운영됨. 국고지원내용은 아동학대 상담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및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의 일부를 자체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아동학대예방센터 조직체계

  보건복지부 =>시, 도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 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 각 분야의 전문가 8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사례 판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상담원과 자체사례판정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만 학대 사례에 개입하게 됨.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997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01년부터 학대로 발견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음.
  · 따라서 2000년 전체 신고건수가 1,678건이었던 것에서 2002년에는 2,946건, 2003

년에는 4,983건이었음. 이는 2003년에 비해 20% 증가한 것이며, 2001년에 비하면 35.7%가 증가한 것임. 2003년도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중 각각의 학대를 중복학대로 따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가 347(11.1%), 정서학대 207(7.1%), 성학대 134(4.6%), 방임 965(33.3%), 중복학대 1155(39.5), 유기 113(3.9%)으로 나타났고, 이를 다시 아동학대 사례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방임이 1,514건(35%), 신체학대 1,315건(30.4%), 정서학대 1,172건(27.1%)이며, 성학대 및 유기는 203건(4.7%)과 126건(2.9%)이었음.

2)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정부 정책

가) 민간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의 문제

-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롯하여 모든 아동학대 예방 센터들이 민간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위탁 운영되는 현행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체계는 사실상 학대아동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만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소극적인 국가책임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아동보호 서비스는 학대아동을 예방하거나 치료 보호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법조계, 학교, 경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자원들 간의 공조체제와 협조체계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체계간의 협조체계나 공조체계를 이루지 못하여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예방센터의 자체 역량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 아동학대예방센터간의 보호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것임. 아울러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보호가 불가능할 것임.
- 그리고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할 경우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아동주변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됨.
- 민간기관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지정, 또는 설치되는 과정에서 민간기관들 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고, 센터운영 신청시 정부가 법인의 자부담을

요구함으로써 법인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센터신청이 불가능한 실정임.

나)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

- 아동복지법 제 27조에 의거 상담센터의 상담원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야 함(조사권만 부여).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장조사시 상담원은 가해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변안전의 문제가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찰의 업무보조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따라서 준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음.

다) 아동학대와 연관된 기관들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 아동학대에 관여할 수 있는 각 시, 도, 군, 구의 의료계, 법조계, 경찰, 학교 등의 역할에 대한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실행시 지침이 되는 업무수행방식과 절차를 언급하고 있으나 어느 사항을 어느 단체가 개입해서 도와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아동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 조직체를 흡수할 수 있는 단체 연합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형편 임.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들은 대부분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network을 갖추고 아동학대 관련 사회영역과 연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임시방편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협조체계를 이루는 기관도 주로 병원이나 경찰 등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간의 정기적인 접촉도 전혀 없거나, 1년에 1~2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장조사시 경찰과의 동행하는 경우가 7%에 그치고 있고, 피해아동의 99.6%, 가해자의 99.4%가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만을 제공받았다 (보건복지부, 2003)는 사실은 아동보호서비스의 협조체계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임.
- 이러한 체계는 아동학대 사업이 각 기초단위의 표면적인 사업에 그칠 공산을 높여주고, 아동에게는 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가

능성을 높여 줌.

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부족

- 정부의 각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연간 인건비 1,300만원 정도 (8명/인, 년)와 운영비 4,2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았고,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인건비 1,500만원정도 (8명/인, 년)와 운영비 2,2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았음.
- 2004년의 경우 운영비, 사례관리프로그램, 장비비 등으로 중앙아동예방센터에 대해 총 2억 9천 2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는 인건비, 운영비, 현장조사비, 장비구입비, 피해아동 검사비 및 치료비,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 8천 2백만 원이 지원됨.
-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예산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치료, 사후관리, 예방, 조사연구 사업 등 방대한 아동학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아동학대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 임. 예산의 제한은 각 예방센터들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에 치중할 가능성을 높임.
-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일정액의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적인 역할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전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

마) 각 아동학대예방센터간의 역할과 의무규정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방아동예방센터 그리고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간의 역할에 대한 중복이 있고,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와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정보교환이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각 지역 아동예방센터의 기능의 자율성을 촉진하면서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적 동질화를 이룰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수적 증가에 맞는 기관들 간의 관계규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업무의 중복을 막고 아동의 필요에 접근하는 효율적인 서비스와 지역 접근성을 높여 위험상황에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바) 아동학대예방센터 인력의 부족 및 예방센터의 수적인 부족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들의 역할은 매우 포괄적임. 상담원이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학대 아동의 발견에서부터 학대 아동의 진단과 보호,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상담원의 판단에 의해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음. 이러한 상담원의 종합적인 역할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담원의 전문성의 약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임. 상담원 한사람이 학대 아동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현행 제도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비해 상담원의 수가 부족함. 각 센터별 상담원의 수를 늘리고, 전문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사) 아동학대예방센터 사업의 제한

-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임과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예방센터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다룰 보호대상 아동의 범주를 설정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방임과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모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는 어렵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취약함.

아) 보호서비스과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소외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는 아동과 부모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아동과 부모는 단지 학대를 평가하기 위한 초기 사정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신분으로 참여할 뿐임.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아동학대와 방임]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원조를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여러 지역에서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돼야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사업가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을 하라.

b)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c)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연령대로 분산돼 있는 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라.

4) 아동학대예방센터 확충과 연계체계를 위한 정책제안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에서 국가책임의 강화

❍ 국가의 공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기관 개발.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정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주도적인 전문기관이 구성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아동보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와 전문인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공적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의 아동학대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중앙조직으로 전환시키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현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의 모든 센터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아동학대예방센터들에 대한 공적 기관으로의 전환 내지는 공적 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되는 전문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함.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각 지역센터간의 관계 규정. 중앙센터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센터와 지방정부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보호 조정자 규정

- 아동학대사례가 발생했을 때 센터마다 각기 다른 사례에 대한 접근은 학대아동이 받게 될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임.
- 따라서 학대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이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총괄해서 이끌

어 나갈 책임과 권한을 소유한 아동보호조정자를 둘 수 있어야 센터간 혹은 기관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영역의 보호체계 안에서의 서비스제공의 의무 규정 마련

- 예방센터가 있는 각 지역별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의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구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관련영역이 아동보호의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해야 할 의무규정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관과 방안을 법과 지침서에 명시해야 함.
- 아동보호 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절실하게 필요 함. 이를테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어떤 한 아동이 신체학대를 당했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부모가 이를 거부하고 아동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할 때 이를 법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함.
- 사법부가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기 위해서 '판결의뢰 제도'를 마련해야 함. 부모가 학대사정을 거부할 경우 아동의 보호, 건강, 발달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명령권을 사법부가 발효할 수 있는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 조사나 격리, 또는 치료기관에의 인도 지시를 부모가 거부할 경우 부모책임 명령(parents responsibilities order) 제도도 필요함.
- 아동학대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들에게는 '아동보호 인증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승인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지원혜택을 제공해 주어야 함.

❍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업무분담

- 사례관리자와 치료자를 구분하여야 함. 위기관리체계를 맡은 사람이 치료자가 되는 것은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아동을 격리한 상담원이 부모교육을 하기는 어려움.

❍ 사례판정위원회의 보완

- 사례판정위원들의 활동범주를 넓히고, 모든 학대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임. 사례판정위원회의 기능확대와 상담원의 업무분담으로 사례관리의 전문화를 이룸.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야 함.
- 사례판정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명령, 갈등 시 조정위원회로 사례를 이관할 수 있는 권한, 사례의 종결, 사후관리 기관, 내용, 책임자 선정 등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야함.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아동 성학대의 경우 성학대 아동의 조사, 사법부 의뢰 등을 원스톱으로 담당하기 위해 여성부의 지원으로 2004년 6월 설립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역할 중복이 문제가 되기 때문임. 성학대 아동의 보호과정에 대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상에 명시해야 함.

❍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에 대한 예산지원의 현실화

· 센터 당 직원은 8명이지만 예산지원은 5명에 불과하고 차량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야간 등 긴급 출동시 어려움이 있는 등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운영여건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됨.

4. 청소년기에 청소년의 권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

- 0교시의 강요로 아침식사를 결식하기 쉽다.
- 우울 등으로 자살충동을 가질 때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 패스트푸드 등 몸에 좋지 못한 음식에 노출되기 쉽다.

[보호권]

-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되어 방임되기 쉽다.
- 성매수나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 약물오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
-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 아르바이트에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범죄를 저지를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발달권]

- 적절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한다.
-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로 방출될 수 있다.

- 흔히 여자의 경우에 성차별 문화를 답습하도록 강요받는다.
- 사생활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받기 쉽다.

[참여권]
-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 연령차별로 '참정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 [사례연구] 위탁가정 등 대안가정 아동의 법적 권한 확보와 지원

1) 위탁가정 등 대안가정 아동의 보호실태

가) 요보호 아동의 발생 및 위탁가정의 실태

- 보건복지부의 통계연보와 내부자료에 따르면, 요보호 아동은 1999년 7,693명, 2000년 7,760명이던 것에서 2001년을 기점으로 1만여 명을 넘어서 2001년 12,086명, 2002년 10,057명, 2003년에는 10,222명이 발생함.
- 요보호 아동수는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00명 이상이 증가함. 2003년 미혼모의 아동인 경우가 43.6%, 빈곤 및 부모의 실직에 의한 경우가 42.4%를 차지하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전체 요보호 아동 중 시설보호는 4,663명(46.4%), 입양 2,544명(25.3%), 위탁보호 2,177명(21.7%) 이었고, 2003년의 경우 전체 10,222명의 요보호 아동 가운데 4,747명이 시설 수용되었고, 3,851명은 입양(국내입양: 1,564명, 국외입양: 2,287명), 2,392명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음.
-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6,184명으로 미취학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99명이나 되고 초등학교 재학 중인 소년소녀 가장세대도 2003년 한해 1,309명이었음.
- 위탁보호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동이 부모로부터 임시로 분리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보호형태로 부모 이외의 의무부양자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부양의무자 이외의 친인척 위탁가정 및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으로 구분 됨.
- 2001년 현재 위탁보호 아동은 4,325명인데, 이중 1,170명(26.4%) 이 대리양육가정이고, 2,931명(66.2%)명이 친인척 위탁이며, 324명(7.3%)만이 일반위탁으로 일반위탁

의 규모는 적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호대상인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소년소녀가장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보호제도라고 지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2000년 이후 소년소녀 가정 아동의 상당수를 대리보호 및 친인척 위탁가정으로 전환하면서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수는 감소함.
- 그러나 입양의 저조 및 가정위탁사업의 협력체계 미흡으로 요보호 아동의 보호조치에서 여전히 시설보호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10세대를 선정하여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요보호 아동 5~6명과 보호자 1인으로 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03년 현재 32세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설보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을 축소하고 그룹홈 보호를 계속 확대할 방침임.

나) 위탁가정 아동의 인권 실태

- 대리 및 친인척 가정의 장기위탁보호가 대부분임에 따라 위탁부모의 연령은 60세 이상, 소득은 50~100만원, 교육은 무학,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위탁부모에 의한 보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가정위탁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일반 위탁부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위탁부모의 학대위험에 처한 위탁아동사례도 보고된 바 있음. 조선일보 2004년 1월 28일자 기사에서 400여 만원의 카드빚을 지고 있는 부부가 어린이를 위탁받아 양육하면 매달 수십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 2003년 12월 15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두 아이를 데려온 뒤 한 달여간 수시로 구타하고 굶기는 등 학대한 부부가 경찰에 의해 구속된 사건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위탁아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가 발생해도, 위탁아동이 건강상의 치명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돼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함. 위탁가정은 교육비와 의료비의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위탁가정 양육지원비는 일반위탁가정의 발굴을 어렵게 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음.
- 이외에도 위탁부모들이 위탁아동과의 관계 및 책임과 의무, 권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위탁아동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 함.

2) 위탁가정 등 대안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

-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함.
-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등의 생계 및 교육보호 관련조항에 따라 생계급여 월 28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고, 가정위탁아동의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책정 및 보육료 지원도 시행되고 있음.
- ❍ 대리양육 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가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2000년부터 아동 1인당 월 6만 5천 원씩을 지급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위탁가정에 양육비 지원액을 월 7만원으로 인상함.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등의 지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해당됨.
-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2003년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 지정함.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들 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의 발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됨.
- ❍ 정부는 2004년 그룹홈을 시설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그룹홈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2004년 그룹홈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2003년 2억 500만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것에 불과 함. 그룹홈은 2004년 현재 2003년도와 같은 32개소로 정부의 그룹홈 사업의 확대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음.
- ❍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은 현재 가정위탁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명시된 아동위탁관련 조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동복지사업지침에서 제시하는 가정위탁관련 조항에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임.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위탁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는 위탁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면서 동시에 만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위탁아동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 및 법적 부모 등의 권리를 누구에게 줄 건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음.

❍ 아동복지사업지침의 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내용이 요보호 아동의 필요에 맞는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해 아직도 정책집행의 융통성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위탁가정 부모들에게 위탁아동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대안 양육

40. 위원회는 가정과 분리된 아동의 시설양육에 대한 대안으로 그룹홈을 설립한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룹홈의 설립과 대안 양육 체계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 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a) 그룹홈과 대안양육체계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카운슬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b)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하라. 이는 아동의 견해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 속에 재통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c) 대안양육상태와 취약한 가정 속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라.

4) 주요 외국의 관련 제도

❍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사망 등과 같은 사건 발생 시 시나 구청장이 책임짐.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부가 짐. 가정위탁기준(National Foster Care Standard)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실시하고 있음. 아동이 위탁되면 양육권 및 법적 부모 친권을 지방정부가 보유하게 되면서 아동의 사고, 사망, 질병, 교육 등에 대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정부와 위탁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2002년 수양 및 입양에 관한 절차 등을 담은 '수양·입양 표준화법'이 제정됨.
❍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 내에 모든 아동은 위탁가정으로 배치됨.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배치된 후 일주일 내에 위탁가정을 방문하고, 위탁부모를 제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위탁가정의 생활을 평가함. 배치 후 1개월 내에 사회복지사는 다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배치결정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함. 이후 6개월 내에 위탁가정의 적합성을 다시 평가하고 이 가정이 아동을 위해 최선의 환경이 되는 지를 탐색함. 이러한 평가 결과들을 6개월 내에 정부에 보고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위탁부모, 친부모, 위탁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위탁계약서에는 수양부모의 권리, 친부모의 권리 등을 명시함.
❍ 모든 위탁부모는 지역정부의 공인을 받은 사람들임. 사립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모두 정부에 공인된 기관들임. 위탁가정에 아동이 배치된 후 공무원들은 사후관리에 대해 책임을 짐.
❍ 최근에 서구에서 가정위탁과 관련된 최대의 이슈는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care)으로 알코올중독, 행동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특수한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위탁부모 인증제를 실시함.

5)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가정위탁보호를 관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위탁은 일시보호이며 위탁아동의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위탁사업의 최대목표 임을 관련규정에 명시함.
❍ 각 위탁부모, 친부모, 지방정부, 담당기관 등에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 부모친권, 위탁아동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함.
  ·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동 등에 대비한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서구의 경우처럼 아동위탁과 동시에 양육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키고 사고의 책임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할 수 있을 것임.
❍ 위탁가정 선정과 관련한 실행기준의 보완, 위탁가정의 인증제 실시
  · 나이와 가족구성, 그리고 부동산 소유 등의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가정

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은 위탁가정을 발굴하는데 제한을 가져오는 요건이 됨.

-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는 가정위탁 발굴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위탁가정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현행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 참여에 맡기지 말고 필요한 교육시간을 의무로 규정해야 함.

❍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지원비의 현실화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양육지원비를 차등 지급해야 함.

- 위탁아동 한 사람당 월 7만원이 지급되는 현행 위탁가정 지원내용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볼 수 있음.
- 서구의 경우처럼 양육지원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지원비의 책정은 한 아동 당 필요한 최소액을 정하고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위탁아동별로 차등 지급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함.

❍ 의료급여의 확대

- 위탁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이로써 위탁아동이 의료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위탁부모가 치료유형에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휴가 제도 도입

- 위탁가정 부모들의 휴가는 아동위탁을 위한 재충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처임.
- 선진국에서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은 유급 26주 동안, 노르웨이는 유급으로 39주 동안, 덴마크는 유급으로 47주, 스웨덴은 양부모 모두 유급 6개월, 일본은 출산과 동일한 육아휴직, 미국은 유급 6주, 무급6주, 캐나다는 유급 6개월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위탁부모 휴식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치료적 가정위탁의 활성화 방안 개발

- 문제행동, 알코올중독, 행동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에서 위탁보호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탁 보호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함.
- 상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무상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 아동의 특수한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모두 지역에서 지원 받는 체계를 개발해야 함.

❍ 사후평가의 구체화, 체계화

- 아동이 일단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나면, 사후관리 및 평가가 전혀 실행되고 있

지 못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후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위탁부모 선정기관과 지방정부의 관련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한 후 이들의 적응상황을 평가하고, 양육형태, 역량, 아동과의 적응 등을 배치 후 최소한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을 주기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위탁 대상아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탁아동에 대한 현행 규정은 '18세 미만의 아동,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밖의 사유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여 위탁보호 대상아동을 평가하는데 위탁기관과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소지가 있음.
- 위탁아동 선정기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아동대상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각 해당항목에 대한 기준평가표가 마련되어야 함. 위탁보호 대상아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 위탁가정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 위탁가정을 개발하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세계수양부모협회장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위탁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탁가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홍보활동은 위탁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 임.

5.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과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글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별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아동권과 국가인권정책의 방향을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 생존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부모의 양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다. 아동은 출생과 함께 부모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데, 부모의 미혼, 사망, 가출, 이혼, 빈곤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매년 1만명 가량 발생된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빈곤과 이혼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은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주로 입양 혹은 시설보호를 하였는데, 향후에는 국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대폭 늘리며, 가정위탁이나 소규모시설에서의 보호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양육위기에 빠진 이혼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의 생존권도 시급한 문제이다. 부모의 이혼시에 자녀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혼후에 양육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법적 조치가 약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이혼가정의 아동도 경제적 보장을 받으며 자녀로서 부모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아동 보호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체계적 서비스 제공, 불의의 사고의 예방과 안전 조치 강화,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과 보호대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대책, 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등이다.

한국 정부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아동학대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위기개입은 상당히 정착되었지만, 학대받는 아동을 중장기적으로 보호하면서 후유증을 치료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으로 재학대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행중인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이 선진외국에 비교할 때 2~5배 가량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학교주변에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의 예방 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과 보호대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대책, 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이 절실하다. 아동은 미래의 주인공이면서 현재의 주역이기도 하다. 발달단계상 정체감의 위기를 겪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위험에 빠트리는 유해한 업소, 물품, 약물, 매체, 행위 등에 대한 규제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설사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적절한 변호권의 확보 등 성인에 준하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년사법을 개선해야 한다.

아동 발달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획기적 신장, 아동의 학습권을 학교와 사회에서 보장,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아동의 여가시간 확보와 문화향유권의 보장, 아동문제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실질적 지원 등이다.

최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수혜율은 크게 신장되어 가고, 초・중・고등학교의 취학률도 100~97%이기에 아동의 발달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전 7시 30분까지 등교하게 하는 0교시와 강제로 실시되는 야간자율학습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은 아동의 학습권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취학률과 같은 양적인 증가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학교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아동의 학습권과 함께 여가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강제로 유치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며 아동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공간과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성장과정에서 성적, 진로, 성, 인간관계 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 참여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의 제도화,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권 신장,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성인의 인식 제고 등이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발달권은 어느 정도 신장되었지만, 아동의 참여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아동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부모나 교사 그리고 성인이 아동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운영에서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 학교생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학생의 참여 등이 중요한 지표이다.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 선거권의 하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개정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생활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정책을 적절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법과 행정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야 한다. 특히, 아동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아동권 보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민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인 자를 부모의 부속물로 인식하는 민법의 각종 조항을 개정하고, 교장에 의한 학생의 체벌을 합법화시킨 초중등교육법 등을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과 교사 등 관계자에게 아동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논의된 아동권의 주요 쟁점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제반의 정책이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길 촉구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사회복지사, 교사, 보건의료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와 부모 등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아동의 권리상황을 점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기 바란다.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행복한 사회이다. 뿌리깊은 연령차별, 성차별, 인종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은 바로 복지사회이다.

<참고문헌>

강인수(1986). 학생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청구 논문.

국가인권위원회(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4).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김성재 외(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출판사.

김승권 외(200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증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지・김세진(2004). 외국의 청소년인권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은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방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연구-4(1). 한국아동권리학회.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청소년이 알아야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미국아동복지시설연맹 편, 차인홍・송경옥 역(2004).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기준. 서울:

은평천사원출판부.
박향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함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Vol. 12 No 2. 창원: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백우정(1993). 아동권리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용찬 외(199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아동권리조약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외(2002). 200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양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2).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정곤(2005). “한국의 아동정책과 전달체계”. 아동권리교육과정Ⅱ.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선영(200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교육과정Ⅱ.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윤덕경・장경아(2002). 가족법상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이영숙・이종원(1994).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2005).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인간과복지.
이용교 외(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서울: 인간과복지.
이재연(2005). “한국의 아동권리현황과 문제분석”. 아동권리교육과정Ⅱ.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종원・황진구・이혜연(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태수(2000).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실태 및 보호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아이들과 미래.
이태수・함철호・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5호. 서울: 한국아동복지학회.
조흥식(2000). “아동권리지표에 따른 ‘아동최선의 이익’ 정책이행 분석”. 한국사회과학 Vol 22 No 3.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짐아이프, 김형식・여지영 역(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인간과복지.
최윤진(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연구-7(2).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최현미(1998). “아동복지시설의 전문화 방안-미국아동복지협회의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집. 평택: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1999).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9).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3(1).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子どもの權利條約總合研究所(2002). 川崎發子どもの權利條例. エイデル研究所.

子どもの權利條約ネcトワーク編(2001). 學習, 子どもの權利條約. 日本評論社.

高橋重宏(2000). 子どもの權利擁護. 中央法規出版.

Council of Europe(1996). The rights of the child: A European perspective. Council of Europe.

Davidson, S.(1993). Human Rights.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United Nations(2001). CRC-General Comment No.1-The Aims of Education. United Nations.

_____(2002). CRC-General Comment No.2-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_____(2002). CRC-General Comment No.4-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관련 사이트

* 정부기관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http://www.child.seoul.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 비정부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www.minbyun.jinbo.net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welfare.pspd.org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www.ilovechild.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한국이웃사랑회 http://www.yes4good.org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http://www.koreayouth.net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

UN 청소년과 홈페이지 www.un.org/esa/socdev/unyin

필자소개: 이용교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복지교육원을 창설하고 http://www.okwelfare.net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론, 디지털 복지시대 등이 있고,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등 인권 관련 저서가 다수 있다. 연락처는 010-4610-2458, lyg29@hanmail.net 이다.

<첨부자료>

아동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2004년 7월 27일과 28일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국제청소년회관(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열렸습니다.

그 첫날 전국에서 모인 아동(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80여명에게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강의하고, 이들에게 "내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와 "그것의 해결방안"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중 25명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1. 이주원

[권리침해]

- 어른들의 말은 경험을 통해 조언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의 의견을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고, 무조건 어른 뜻에 동의하라는 요구
- 아동들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의자들고 책상 위에 올라가라는 심한 체벌

[해결방안]

- 잘못했다고 무조건 잔소리나 심한 말, 체벌로 아동들을 다스리지 말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도록 하라는 다정스러운 말로 긍정적이게 말해주면, 우리들도 반항심을 갖지도 않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 한번이라도 아동들의 의견을 생각해준다면, 아동들도 인간이라는 자부심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항상 어른 뜻대로 한다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해보지도 않을 것이다.

2. 이효인

[권리침해]

- 차별하는 것이다: 친구나 부모님이 형제, 친척, 친구들 중에서 잘 하는 걸 말하고 차별을 한다.

- 출석번호를 남자부터 항상 먼저 부른다. 난 그게 제일 싫었다. -학교에서

[해결방안]

- 친구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한다.
- 부모님에게 나도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말한다.
- 남녀 출석번호를 같이 부른다.

3. 김지은(초등 5)

[권리침해]

- 엄마 아빠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 내용을 말해달라고 하면 “너같이 조그만 (어린) 애들은 몰라도 돼!”라며 우리에게 화내시며 이야기도 안해주시고 무시할 때. 나이가 적은 건 우리 죄가 아니고 우리도 알고 싶은데 화가 난다.
- 비슷한 경우로 친구들도 내 앞에서 귓속말할 때 화가 난다.

[해결방안]

- 말해줄 수 있을 때는 말해주시고 말하기 곤란할 때는 왜 말할 수 없는지 잘 설명해 주세요!

4. 위증현

[권리침해]

요즘 부모님들은 외식 등 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많다. 허나 우리 아동들이 제 시간에 안 들어오고 밤에 안 들어오면 엄청 혼날 것이다. 시험 치기 전날 어머니는 집에 안 들어오셨다. 그런데 나는 시험이 끝나고 친구집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늦게 들어왔냐는 이유로 혼나기만 하였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

[해결방안]

앞으로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후에는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셔야 할 것이다. 이젠 이런 이유로 나이차별이 없으면 좋겠다.

5. 김주원

[권리침해]

언니라고 먼저 하고, 먼저 먹게 한다.

또 언니가 위고 아래인 동생이 항상 일을 받아드리고 시킨 것을 하게 한다.

[해결방안]

위 아래 등급같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6. 이은별

[권리침해]

우리 집에는 나와 남동생이 있다. 남동생과 나는 5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여러 차별이 있다. 예를 들어 힘든 짐이나 물건은 내가 더 많이 들거나 동생은 안들고 간다거나, 동생이 초등학생이라고 게임이나 텔레비전를 더 많이 보게 하고, 청소같은 것도 거의 내가 하고...

[해결방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별차이가 없다. 물론 나이차이는 많이 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달라도 범위는 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걸레질, 바닥쓸기 등을 할 수 있고, 중학생은 설거지 짐 옮기기 등... 이해할 수 있는 차별은 감당할 수 있지만 무조건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은 없어야 한다. 사람은 하늘 아래 모두가 귀중하고 평등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

7. 김효진(초등 6)

[권리침해]

엄마가 너는 이런 것을 하면 안된다. 너가 왜 하니? 그런 건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솔직히 왜 우리도 커피마실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나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제발 이런 일이 없어 어린이도 당당하게 다음 세계에도 아동권리는 영원히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 지켜나가자”

[해결방안]

우리는 앞으로 아동의 권리를 받고 우리는 이런 것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용기있게 말할 것이다. “아동권리 파이팅”. 또 앞으로 다음 세계에도 인권교육 등이 계속 실천되었으면 한다.

8. 강은혜

[권리침해]

- 가정: 대화할 때 말 무시한 것
- 학교: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 차별
- 아무데서: 남자는 아무데서나 자도 되고 여자는 안되고

[해결방안]

- 가정: 우리들의 말을 잘 듣는다.
- 학교: 성적을 떠나서 똑같이 대한다.
- 아무데서: 서로 집에서 잠을 잔다.

9. 김지영

[권리침해]

여자는 밤늦게 들어오면 많이 혼내고 남자가 밤늦게 들어오면 안 혼나는 것

10. 박세라

[권리침해]

- 가정에서: 여자라면서 나에게만 심부름 시킬 때 화난다. 성별차별 NO
- 학교에서: 시험이나 출석부를 부를 때 항상 남자 먼저 한다.
- 사회에서: 항상 보면 여자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다.

[해결방안]

- 난 남녀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여자는 일도 하고 살림같은 것도 하

고 남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같다. 남자는 여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11. 김민경(여중 1)

[권리침해]

선생님이나 부모님, 사회 등에서 나의 내면보다는 단순한 숫자인 성적으로 평가할 때

[해결방안]

성적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설명드리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아이들과 같이 선생님께 항의해본다. 또한 내면을 중요시 하자고 의견을 펼칠 것이다.

12. 민광준

[권리침해]

지난 시험에 4등을 했는데 엄마께서 나에게 누구 누구는 올백 맞고 했다는데 너는 평균 95점 맞았다고 하였다. 나는 나보다 공부가 실력이 떨어진 친구보다 훨씬 잘했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까짓게 뭐가 났냐고 하며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해결방안]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맘을 상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참고로 우리가 반항을 해도 절대 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13. 김민정

[권리침해]

- 선생님께서 가족문제 중 세세한 것까지 알려고 하셨을 때
- 말 잘못한 것 가지고 심하게 때리셨을 때(학교)
- 가정에서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을 못보고 공부만 하게 하실 때

[해결방안]

-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한다.

-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을 마음껏 봤으면 좋겠다.
- 체벌을 심하게 안하셨으면 좋겠다.

14. 정선영

[권리침해]

- 학교에서 무얼 못한다구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시킨다. 다른 친구들도 그 점을 고쳤으면 하신다.
- 급식을 할 때 남자들은 급식을 나누어주고 끝나지만, 여자들만 옷이나 모자 등을 빨고 식판을 닦는다. 또 못할 땐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다.

[해결방안]

- 꾸중을 하실 땐 아이들 앞에서 꾸중을 하지 않으시고 조그마한 소리로 꾸중하셨음 한다.
- 여자라고 빨래와 식판닦이 등을 시키는 건 기분이 나쁘다. 남자도 같이 여자들과 빨래하고 닦았으면 좋겠다. 여자 남자 차별이 없어졌음 좋겠다.

15. 민고운(초등 6)

[권리침해]

- 현장학습 여행지를 정할 때 가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 의견은 듣지 않고, 선생님 마음대로 여행지를 정해 불만이 많았다.
- 사회자를 정하는데 우리 의견을 듣지 않고 선생님 마음대로 사회자를 반장으로 정했다.

[해결방안]

- 보기를 정해 친구들에게 투표를 시켜 여행지를 정한다.
- 사회자를 투표를 통해 사회를 잘 보는 애로 뽑았으면 좋겠다.

16. 김원주

[권리침해]

어린이라고 꼭 무시당하는 날이 가끔 학교에서 일어난다. 저희 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생님 마음대로 시간표를 바꾸거나 갑자기 어린이회의 또는 시간표에 들어있지 않은 시험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선생님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행동하는 선생님이 밉기도 하고, 우리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든다.

[해결방안]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의견을 내어도 될 것을 그 시간이 아까워서 안하는 것이 너무 나쁘다. 한번이라도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17. 전현선

[권리침해]

- 매일 집이나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놀고 싶을 때 많이 놀 수 없는 것
- 출석번호를 남자부터 부를 때, 차별되는 것 같다.

[해결방안]

- 공부는 1시간 하고 놀 시간은 30분씩 주었으면 좋겠다.
- 여자 한번 부르고 남자 한번 부른다. 여자 남자 섞어서 부른다.

18. 박상은

[권리침해]

학교에서 친구 돈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이 나오질 않았다. 우리 반이 체육시간 때 선생님께서 애들 말을 듣지도 않고 무작정 가방을 뒤지셨다. 그때는 정말 싫었다.

[해결방안]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어른들께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줘야 한다.

19. 조시빈

[권리침해]

- 여자라고 축구부 등 기타 체육부에 들지 못할 때, 참여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함.
- 여자는 힘이 약하다며 얕볼 때, 보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함.

[해결방안]

- 체육부는 물론 모든 부들을 남녀부로 나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남자는 약간의 호신술만 가르치고, 여자는 엄청난 호신술을 국가에서 가르친다.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매일 힘이 약하다고 혼날 때(?) 등이 있을 때도 있으면 무척 기분이 나쁠 것이니,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대우!

20. 이재형

[권리침해]

학교 선생님이 나의 일기를 보고 뭐라고 할 때

[해결방안]

나는 일기를 읽지 말고 날짜만 검사하고 살짝 훑어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21. 원혜송(초등 5)

[권리침해]

- 수학여행 때 여행지를 정할 때 우리에게 혜택이 있는 꼭 필요하는 곳만 갔으면 한다 (학교에서)
-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혼했을 때 아이가 있는 집에선 무조건 아이는 남자가 가

져가야 한다. 너무 안좋다(사회에서)

[해결방안]

- 수학여행은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선생님들 의견만 존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했으면 좋겠다.
- 이럴 땐 법을 바꿔서 여자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여자도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22. 서주훈

[권리침해]

- 학원 열풍에 부모님이 전염될 때
- 체벌을 너무 학살적으로 할 때
- 여자들에게만 잘 해줄 때
- 만화에서 학대적이고 매 때릴 때
- 국가가 너무 잘 못할 때(어린이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아래도 마찬가지)
- 어른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못할 때

[해결방안]

- 아동권리법을 제정해서 아동학대를 막는다.
- 아동법을 만들어 아동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소속 아동권리보호위원회를 만든다.
- 세계 아동국가를 만든다.
- 세계 유엔아동위원회를 만든다.
- 국제 아동회의를 한다.

23. 장혜영

[권리침해]

영화를 볼 때 재미있는 것은 12세, 15세, 19세 등등해서 11살은 보지 못하는 점

[해결방안]

12세미만으로 하던지 전체관람으로 하면 좋겠다.

24. 김지혜

[권리침해]

아직 어리다고 무시하고, 얕보고 위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학대하거나 괴롭히고 욕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아동의 권리를 잃는 경우이다.

[해결방안]

아동이라도 사람이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학대하거나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쪼꼬만 것이 까불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새싹을 무시하지 말고 짓밟는 것이 아닌 존중해 주어야 한다.

25. 이정선

[권리침해]

저는 길을 가다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과 키가 비슷한데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가면서 “너희 둘 사귀냐?”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냥 “너희들 친해보이네?”했으면 좋았는데, 왜 그러는지?

[해결방안]

- 내 생각을 확실히 말한다.
-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희망만들기

희망만들기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2003. 12. 11

2002/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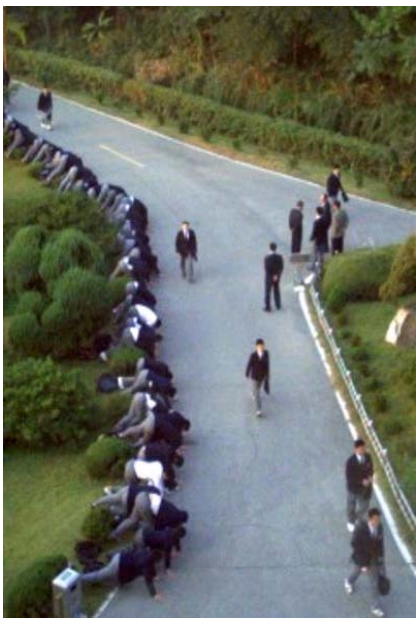

희망만들기

의미

- 아동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아동이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 전달 행위

목적

1.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확대를 기반으로 양육유형을 개발, 실천
2.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아동 인식
   –>아동에 대한 사의 가치와 지위 상승
3. 아동중심의 국가정책과 제도 확립
4. 자신의 권리를 보장 존중, 사회적 역량 갖춘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희망만들기-권리교육의 원칙

-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
-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하기
-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변화 · 발전 될 수 있다는 인식
- 인권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
-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 분석하기
- 자신이 가진 '편견'을 식별하고 '관용'키우기
-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술
-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3. 희망만들기: 아동권리 교육의 실제

아동권리 교육의 원칙

- **'현실'에서 출발** : 모든 학습은 참여자의 욕구와 관심, 경험, 문제에 기초.
- **활동** : 학습은 개별활동과 집단활동을 결합한 '활동적'인 것.
- **수평적인 대화** :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
- **비판능력 개발** : 비판하는 능력, 사람과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을 개발
- **감정 표현의 증진** : 학습 방법이 참여자의 감정을 고려할 때만이 가치를 학습.
- **참여의 증진** : 최상의 학습법은 참여하고, 의논하며, 결정에 참여.
- **통합** : 학습은 '머리, 몸, 가슴'이 학습 과정에서 통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

3. 희망만들기: 아동권리 교육의 실제

■ 아동권리 교육의 학습과제

타인존중

타인과 협력하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태도습득

의사소통능력
지적능력
개방적, 비판적인 사고력

단호함

인간존엄, 호기심,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 정의와 공정성, 갈등 해소하기, 감정이입

3. 희망만들기: 아동권리 교육의 실제

■ 아동권리 교육의 방법

● 학교 교과과정 및 학교생활

도덕
사회
언어
수학
역사
종교 교육
예술
지리
음악

3. 아동권리 교육의 실제

아동권리 교육의 방법

- 다양한 매체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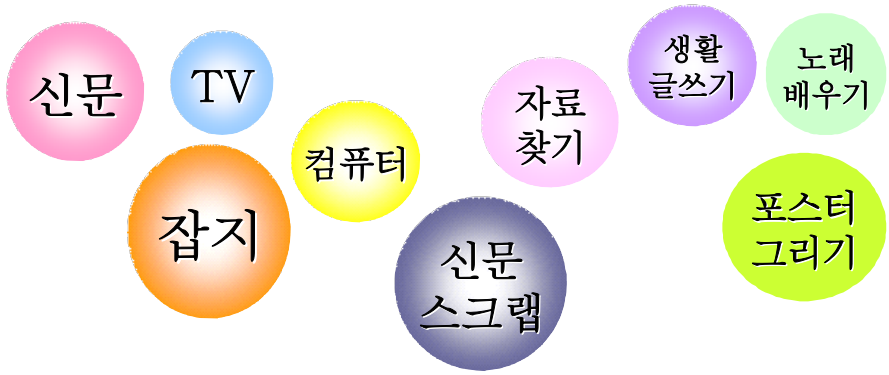

4. 희망만들기

▶ *돌아가며 얘기하기*

한 주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한 마디씩 하기, 할당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의견이 없거나 말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통과'라고 표시할 수 있다.

▶ *Word Wheels*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는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안에 있는 원과 바깥 원의 사람이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한다. 마주보는 사람과 주어진 주제에 대해 견해를 나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쪽 원의 사람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여 마주보는 사람과 이야기한다. 한 사람이 3~4명과 견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4. 희망만들기

▶시나리오 쓰기

1. 함께 쓰기

글쓰기 형태로 하는 토론이다. 핵심 질문을 주고, 각자 종이 위에 자신의 의견을 적게 한다. 각 종이는 오른쪽으로 넘겨지며, 첫 줄에 적힌 말을 읽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밑에 적어 넣는다. 적절한 인원이 응답할 기회를 가질 시간을 할애한다. 그리고 나서 종이는 다시 왼쪽으로 넘겨진다.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2. 개인쓰기

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현재, 혹은 미래의 상황을 적고 그 이유를 적는다. 각 개인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준다.

희망만들기(권리연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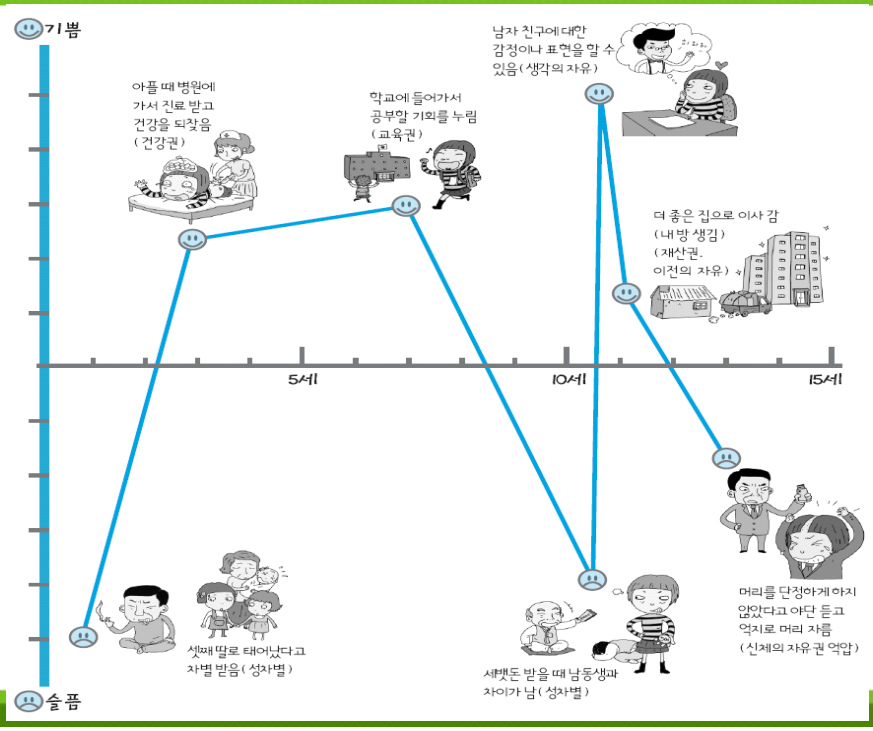

4. 희망만들기

▶어린이 권리신문 만들기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신문제작
–제작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평
–미래상황 예측
–현재 필요한 조치 개발

4. 아동권리 교육의 기법 및 실제

우리나라 아동인권문제-조각 맞추기 활동

▶ *각 조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아동 인권문제의 예가 적힌 문장 2~3 개 정도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배포한다.*

▶ *각 조는 할당된 문제에 적힌 인권문제와 가장 연관성이 깊다고 여겨지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연결시킨다.*

▶ *조를 다시 짠다. 각 조의 1번끼리, 2번끼리 모이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이전에 조에서 논의한 사항을 공유한다.*

▶ *공유한 내용 중에서 그 조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들로 5가지의 인권항목을 구성한다. 또한 제기된 문제 중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돼야 할 항목 5가지를 구성한다.*

▶ *전체가 목록을 공유한다. 왜 그런 목록이 작성되었는지 배경 설명도 공유한다.*

- 나는 몹시 배고프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무서워 떨고 있다. 창고 계단 끝에서 혼자 앉아 있다. 목과 어깨를 하도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어서 근육이 딱딱해졌다.
나는 늘상 이렇게 지낸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지내왔다. 매일매일 이와 같은 생활의 연속이다. 창고에 있는 낡고 허름한 군인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하고 운이 좋은 날만 가족들이 먹다 남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다. 학교에 가서는 배고픔에 주려 음식을 훔치고.....
주말이 매우 고통스럽다. 한 끼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집도 가족도 없는 것 같다. 내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A child Called It에서)

- 생각해보기

  Q.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의 상황을 3분 정도 생각하라.
- Q.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의 상황을 제시하라.
- Q. 아동학대 문제 중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3가지를 말해 보자.

영역 내용	현황	위기평가	필요한 조치		
			기관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보호					
생존					
발달					
참여					

‘It's everyone's job to make sure I'm alright. ’

감 사 합 니 다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조 영 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갈등이란 무엇인가?[1)]

사전적 정의로 갈등은 싸움, 의견·이해 따위의 불일치, 충돌로 정의한다. 영어의 Conflict는 라틴어의 콘플리게레(Confligere)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콘플리게레는 서로라는 의미의 Con과 맞선다, 치다는 의미의 fligere가 합쳐진 말로 다시 말해 서로 맞선다, 또는 서로 치고 때린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갈등은 등나무와 칡을 일컫는 말로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등나무는 생물학적으로 오른쪽으로 꼬여 올라가고, 칡은 왼쪽으로 꼬이는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니 등나무와 칡이 함께 있는 모습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꼬이면서 복잡하고 풀기 어렵게 얽혀 있는 현상이다. 우리말 사전에서 갈등은 그래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첫째는 '견해나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생기는 불화, 충돌'이고 둘째는 '한 개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 갈피를 못잡고 괴로워하는 상태'이다.

갈등은 개인의 내적 갈등에서부터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갈등까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난다.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의 기능, 원인을 기초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만큼 갈등은 다양한 차원으로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갈등에 관한 정의를 보면, 도이치(Morton Deutch)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활동이 발생할 때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루탄스(Fred Ruthans) 역시 갈등은 "목표나 가치관이 양립할 수 없는 상태이며 타인의 목표나 성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고 감정적으로는 적개심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1) 박수선(2002),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 평화교육 프로그램 교사 워크숍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참조.

대체적으로 갈등은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나 목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2]라고 정의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눈에 보이는 드러난 갈등(Manifest Conflict)을 우리는 갈등의 전부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통 드러난 갈등의 이면에는 원인이 되는 갈등의 뿌리가 존재한다(잠재적 갈등 Latent Conflict). 잠재적 갈등이 어떤 계기를 맞아 구체적으로 다투는 행위로 나타날 때 이것을 분쟁(Dispute)이라고 한다. 이 잠재적 갈등에 대해 이해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드러난 갈등이 해결된 듯 보이더라도 또 다른 계기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분쟁으로 표출되고 갈등은 순환된다.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갈등'하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보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답답함', '고민', '싸움'이다. 그 외에도 '분노', '경쟁', '대립', '폭력', '투쟁' 등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간혹 선택, 도전, 해결, 대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또는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나 없으면 좋은 것의 표현으로 한 줄기를 이루고 또 한 측면으로는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갈등은 답답하고 복잡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므로 모른 체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갈등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어떻게든,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갈등의 상대자 또는 갈등상황 자체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갈등을 무서워하고 이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유교적 전통은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를 중요시했으며 갈등은 이 조화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란 생각을 해왔다(이현우, 1997).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라는 우리 속담에서 찾을 수 있듯이 갈등은 없으면 좋은 것이고, 생기더라도 피하거나, 또는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해왔다.

그러나 고도로 분업화된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갈등은 어쩌면 밥을 먹고

2) 갈등의 개념을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해관계나 목표가 상충되고 있는 상태'(강영진(2000)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성공회대출판부, 10쪽)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다 해결의 관점에 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의 주요한 가치인 '공존'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는 것이므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양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는 해결 가능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조화를 깨는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갈등 자체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억제하고 부인하고 회피할 때 파괴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갈등 자체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 정신적 파괴를 가져오는 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

갈등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갈등에 대한 정의만큼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와 목표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가 하면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관계상의 오해,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상대적 박탈감 등 아마도 갈등의 수만큼 갈등의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 갈등의 원인을 유형화해보고 그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분석적 기준을 준다.

Christopher Moor는 갈등의 유형을 5가지로 범주화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이해관계 갈등, 사실관계 갈등, 가치관 갈등, 구조적 갈등, 인간관계 갈등이다.

이해관계 갈등 : 한정된 자원이나 권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인데, 주로 이해관계를 분배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비롯된다.

사실관계 갈등 : 하나의 사건이나 자료, 언행 등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이다.

가치관 갈등 : 신앙, 신념 또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치관은 고정관념, 편견화되면서 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인간관계 갈등 : 서로간의 불신이나 오해로 인해 상호관계가 벌어지는 갈등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오기도 하고, 분노, 증오, 서운한 감정 등 쌓인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불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조적 갈등 :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 즉 잘못된 제도, 관행, 모순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이다. 차별, 억압적인 구조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렇게 5가지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하나의 갈등현상은 일반적으로 여러 갈등유형이 중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나 인간관계 갈등은 거의 다른 갈등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흔히 사람들이 갈등을 대할 때 문제 자체를 대하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갈등을 협동적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대립 경쟁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관계에 더 금이 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갈등현상이 갖고 있는 여러 유형을 개별적, 종합적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갈등해결 지점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사람들은 갈등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목표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Thomas-Kilmann).

Thomas-Kilmann은 이 두 관심사를 두 축으로 해서 목표의 높고 낮음, 관계가 협조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갈등대응스타일을 5가지로 나누었다.

경쟁대립형(Competing)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경쟁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 유형은 승패를 확실히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어도 개의치 않고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즉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을 압도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회피형(Avoiding)

갈등상태에서 얻게 되는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갈등상태에 대처하려 하지도 않는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듯 무시하거나 회피한다. 즉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

순응양보-동조형(Accomodating)

자신의 목표보다는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상대의 목표에 맞춰 문제를 푼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지만 훌륭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나 입장을 주로 수용함

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타협절충형(Compromising)

쌍방의 실익을 생각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즉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협동형(Collaborating)

이 유형은 개인간의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갈등의 해결은 정직한 상호토론과 협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쌍방 모두의 관심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서로의 목표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이 갈등유형들 중에서 어느 것이 어느 상황에서나 바람직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갈등해결의 만족도는 회피형일 때 최소, 협동형일 때 최대가 된다.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나 일관된 유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갈등의 유형, 또 상대자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대응유형과 상대의 대응유형, 그리고 목표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갈등해결의 전략을 세우는 데,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본적 관점과 원리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개인간 갈등에서부터 집단, 국가간 갈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파괴적, 강압적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건설적, 자발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을 포함한 모든 노력이다(이재영, 2002 참조).

갈등해결은 드러난 갈등에 대한 대처만이 아니라 드러난 갈등 이면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그 잠재된 갈등의 뿌리를 변화 또는 제거시킬 때 진정한 평화

적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즉 폭력적 행동의 중지 또는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그 행동을 받침하는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을 평화와 공존의 가치관, 신념, 태도로 변화시키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 해결은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계속 지탱,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Johan Galtung, 1996).

평화적 갈등해결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박수선, 2002).

1) 갈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양한 개개인이 모여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데 각 개인은 너무나 다양해서—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똑같지는 않다—조화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집단을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그룹 또는 개인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불만이나 요구가 드러나지 않고 쟁점이 무시된다면 마치 조그만 뾰루지가 종기가 되어 곪아터지는 것처럼 갈등이 점점 자라 매우 부정적으로—심지어 폭력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갈등이 변화, 도전의 기회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개인,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2)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 성별, 인종, 또 다른 문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차이에 따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차이가 우열을 가리는 차별로 되고, 또는 무시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존중은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나만이 아닌 타자 역시 존중한다면 다양한 관점과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갈등을 자연스럽게,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갈등의 한가운데 놓이더라도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평화적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들은 존중을 기반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3)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있다/자주성과 주체성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태어날 때 지닌 특성 그대로 생로병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기 발전을 계속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람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다. 남과 내가 다른 것이므로 나다워야 하겠다는 의식이 주체의식이요,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없으니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자주의식이다(고영복, 2002).

평화적 갈등해결은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 스스로의 지혜로 협동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4) 갈등해결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다양성과 창의성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갈등분쟁 당사자 모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사람들은 갈등상황에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문제를 판단하고, 내가 가진 '답'이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답은 주로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답이다. 주어진 틀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 모두 '자신의 답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갈등을 당사자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다. 옳은 것, 최선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스스로에게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지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갈등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똑같은 갈등이라도 그 갈등의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그 해결은 달라질 수 있다.

정해진 답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갈등을 바라보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올 때 더욱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협동/존중하는 민주적 의사소통과정

갈등해결이란 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대화로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대화는 상대가 가진 생각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상호작용이다. 대화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잘 듣는 것은 '존중'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대화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입장,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갈등 당사자들은 애초에 가졌던 각자의 목표를 새로운 공동의 목표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을 내올 수 있다.

관계상의 오해, 불신으로 비롯되는 갈등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되기도 한다.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참여(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그리고 존중(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동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화적 갈등해결의 과정

1) 갈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로 동의한다.

최소한 어느 한쪽이라도 갈등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미 감정적으로 되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본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감정이 누그러들 때까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연기한다.

2) 팀 구성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갈등 당사자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 간의 동의를 통해 당사자들끼리 문제해결을 위한 팀을 구성할 수 있고(협상), 각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3자가 개입된 팀(중재 등)을 구성할 수도 있다.

3) 문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본다. 그 다음, 자신이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 양쪽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들어보고 자신의 감정, 바라는 바, 요구하는 것 등을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한다(I message). 또한 상대가 말하는 것을 부연설명(Paraphrasing)해 본다. 이리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킬 근본적 문제와 관심사에 도달하도록 애쓴다.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먼저 공동의 기반이 되는 동의의 영역을 명백히 한다. 또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둔다.

4)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모으기(brainstorming)

갈등을 해결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열해 본다. 생각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비판은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기꺼이 변화를 가져오고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새로이 구성해 본다.

예: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라면, 당신과 나는 어떨까요?"

"당신과 내가 확실히 ……를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5) 해결방안들을 평가해 본다.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들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제약이나 한계가 있는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평가해본다.

6) 하나의 해결방안을 선택한다.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선택한다. 양측이 선택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선택하기 위해 취해온 과정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7) 해결방안을 실행한다.

이 방안이 작용하도록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방법이 작용하도록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실행계획을 적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이 계획의 실행에 대해 후에 평가해 볼 시간을 정해본다.

갈등 해결의 여러 과정

갈등을 폭력이나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해결에 대한 자발적 의지와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인가, 3자의 개입을 통해서인가, 3자의 개입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보인다.

제도 문화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협상(Negotiation)은 제3자의 개입없이 의견과 입장이 다른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협상의 목적은 쟁점과 문제를 규명하고 차이를 해결하는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갈등해결의 가장 소망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Mediation)은 당사자들간의 협상이 실패하고 의사소통의 끈이 끊어질 때 중립적인 제3자가 의사소통을 도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보통 조정은 제3자가 자청하기도 하고 양측 당사자의 요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에 따라 법 제도 등에 의해 조정자의 개입이 강제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조정자의 개입이 당사자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자는 당사자간 문제해결에 개입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정은 또한 객관적 진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 각각의 경험과 인식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에 근거한 합의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중재(Arbitration)는 조정과 같이 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돕는 과정인데, 조정이 문제해결의 제안이나 결정권이 당사자들에게 있다면 중재과정에서는

중재자가 갈등 당사자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역시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된 인정과 요청에 의해 과정이 시작된다.

진행(Facilitation)은 다수의 갈등 분쟁 당사자 또는 관련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 회의, 토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갈등의 초기 단계, 당사자간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Dialogue)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그룹 내에서 멤버들간에 정치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가 어렵거나 적대적인 방식으로만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 다른 그룹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모였거나 어려운 이슈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작업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폭력적인 국제, 종교분쟁 등 복잡하고 구조적인 갈등요인을 가진 경우 갈등 당사자들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제3그룹이 모여 간접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학술회의 성격의 Problem Solving Workshop 등에서도 진행의 과정과 진행자(Facilitato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당사자들의 자발적, 긍정적 참여가 근간이 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우리 문화에 맞는 여러 과정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협상의 원칙(Roger Fisher, Ury William의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전략 참조, 1994)**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한다.

일반적으로 문제에 닥치면 사람은 갈등 상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관점, 잣대로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며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못된 행동, 또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면, 일반화시키거나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존중하는 의사소통'이다. 상대의 입장, 관점을 잘 들어주고, 또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의 행동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입장(Position)에서 실익(Interest)으로

입장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겉으로 표명하는 해결책을 말한다.

실익은 입장 이면에 실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보통 문제, 갈등상황에 놓이면 입장끼리 대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입장끼리 대립될 때는 결코 양립될 수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통해, 또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존중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겉으로 내세우는 입장 이면에 진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찾으면 서로의 이해 속에서 당사자간 목표를 조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 과정 역시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그것을 통해 서로의 만족스런 결과를 내올 수 있다.

3) 창의적(상생적) 대안 만들기

흔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한다. 또한 나눌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서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 가지 대안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내오면 내올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판단을 분리시키면(Brainstorming) 더 많은 해결책을 내올 수 있다.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속에 서로에게 득이 되는 해결책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객관적인 기준 적용

사람들은 결과의 '몫'보다도 '과정'의 공정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더 많은 분노, 갈등을 갖게 된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란 당사자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 그것에 근거한 존중하는 의사소통과정이고 그 결과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찾고 그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만드는 것이 평화적 문제해결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갈등해결의 기본 기술

갈등분쟁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해결과정이 진행되겠지만, 어떤 방법과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사자로서, 3자로서 갖추면 평화적 갈등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소개한다.

1. 정보 모으기/관련 데이터와 정보
2. 갈등분석 및 맵핑/과정, 당사자들의 이해, 욕구, 관계,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해
3. 의사소통기술
   -적극적 듣기
   -패러프레이징
   -관찰/몸의 움직임, 감정의 변화 등
   -말하기/나의 감정, 실익과 욕구 중심의 말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4. 사람 중심의 기술
   -감정, 분노 다루기
   -편견 다루기
5. 문제해결 기술
   -Brainstorming
   -깊이 파기
   - 난관, 막다른 골목 깨기/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 상대방 내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돕기
   -의사결정
   -합의 만들기
6. 계획 세우기/큰 협상과 조정에서 꼭 필요하다.
   -방향과 전략 세우기
   -결과를 예측하기
   -여러 가능성이나 대안 모색, 선택

7. 평가 기술

-전체 과정 이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가, 아닌가 등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은 어떤 전달할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의사소통이 정보를 주거나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소통은 나에게서 상대에게로의 정보와 마음의 전이이다. 좋은 의사소통은 적극적 듣기에 뿌리를 둔다. 의사소통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노력이고, 의사소통을 통해 어떤 상황을 깨거나 만든다. 많은 갈등은 좋지 않은 의사소통의 결과로 오해가 생겨 생겨난다.

의사소통을 통해 마음의 전이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태도, 경험, 의사소통스타일, 문화적 배경, 고정관념, 견해, 확신, 지식, 기분, 숨겨진 의도, 성, 나이/세대, 갈등의 접근방식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1) 적극적으로 듣기

-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 말하는 사람의 본뜻이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갈등-분쟁과정에 쌓인 감정을 분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이완되고 내적인 긴장을 해소하게 된다.
- 당사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이켜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적극적인 듣기 요령**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라.
일단 개인적인 관점이나 의견을 접어라.
말뿐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말하는 태도, 행동 등)에도 주목하라.

-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상체도 약간 그쪽으로 기울인다.
- 이따금 눈을 서로 마주친다.
- 말하는 이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자주 끄덕인다.
- 이야기 내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공감을 표한다.
- 불분명한 대목에 대해 효과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해되도록 한다.
- 따지는 식의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과 감정 및 쟁점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는다.

상대방의 말을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

▲듣는 태도/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 시선을 마주친다.
  - 말하는 사람을 향해 앉는다.
  - 말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인다.
  - 요점을 잡으며 듣는다.
  - 그렇군요, 네 등 수긍하는 말을 한다.

▲정확하게 질문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한다.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들은 내용과 느낌을 다시 되풀이하여 말한다.

▲말한 사람의 내용을 들은 대로 요점을 요약해본다.

2) 바꾸어 말하기 (Paraphrasing)

원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말을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바꾸어 말하기는 내가 상대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는 것,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 방식대로 다시 말해본다.
- 공감대를 형성하며 말한다. 섣불리 판단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 말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말한다.
- 사실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여 말한다.
- 중요한 문구 또는 문장은 말한 사람이 한 그대로 반복한다.

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라는 것인가요?
제가 당신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볼게요. 당신의 말은....

3) 열린 질문

단정적, 일반화의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하는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도록 네, 아니오의 대답을 끌어내는 닫힌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의 유형**

1. 따지기식 질문/왜? 도대체?
   “왜 늦은 거야?” “도대체 뭔 일을 이렇게 한 거야?”
2. 이끌기형/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기고 질문을 통해 의견을 표현.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산책하면 더 좋다고 생각되지 않니?”
3. 복합형/문제에 초점을 두고, 잘못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함.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전번에도 이와 비슷한 거 아냐? 어째서 늘 이런 식인지 이야기좀 해볼래?”
4. 닫힌 질문/예, 아니오의 한정된 답을 듣기 위한 질문
5. 가정된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
6. 열린 질문

○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열린 질문보다 흔히 따지기식이나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는 목적을 지닌 질문을 많이 쓴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도 자칫

따지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목소리의 톤을 부드럽게 하고 '왜'라는 직접적 질문보다는 "이유를 좀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기 표현(마음으로부터 주고받는 대인관계 성취를 위한 말하기 방법)

►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기

관찰에 평가를 섞게 되면 듣는 사람은 이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하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다. 또한 평가는 고정적인 일반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김사무관은 너무 자주 지각을 해. → 김사무관은 이번 주에 두 번 지각을 했어.

► 느낌 표현하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표현하는 것.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취약성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느낌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필요와 욕구(needs) 이야기하기

느낌의 근본은 나의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필요)이다. 욕구와 느낌을 연결시킨다.

예) "나는 ...가 필요하기 때문에 ....느낀다."

"나는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화가 난다."

► 상대의 느낌 듣기

나의 느낌과 필요(욕구)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대의 반응을 확인한다.

"제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세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한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 **부탁하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언어로 부탁한다.

<참고문헌>

갈등해결전문가훈련프로그램 참가자(2001), “갈등해결이론”, 『갈등해결 배우기: 이론 방법 적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AFSC

강영진(2000), 『갈등분쟁해결 매뉴얼』, 성공회대 출판부

고영복(2001), 『한국인의 성격 그 변혁을 위한 과제』, 사회문화연구소

박수선(2002), “갈등해결의 한국사회 적용을 위한 문화적 접근”, 민족문제에 대한 갈등구조 파악과 남남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 2차 워크숍 ‘갈등해소와 남남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_____,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 평화교육 프로그램 교사 워크숍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재영(2002), “갈등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해하기”, 『갈등해결워크샵 자료집: 갈등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교육』,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현우(1997),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갈등 대응 전략”,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 관계』, 한나래

Carol Miller Lieber(1994), Making Choice about Conflict, Security and Peacemaking Part 1: Personal Perspectives』, Educators for Social Responsibility

Marshall B. Rogenberg(1999),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compassion』, PuddleDancer Press

Robert Garrity, Faye Wampler, Susan Hess(1998), 『Respect, Responsibility, Resolution』, fsr Associates

American Friend Service Committee (1999), Help Increase the Peace : Program Mannual, (2nd Edition), Baltimore. Roger Fisher, William Ury, Bruce Patton(1994),

Marshall B. Rogenberg(1999),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compassion』, PuddleDancer Press

RTC(Responding to Conflict) ed. (2000), Working with Conflict : Skills and Strategies for Action, London, Zed Books.
로저 피셔, 윌리엄 유리, 부루스 패튼,『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성공적인 협상 테크닉』, 박영환 옮김, 서울: 도서출판 장락, 1994.
Johan Galtung(1996), “갈등이론”,『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외 옮김, 들녘
Stephen R. Corvey(1994),『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 김영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갈등해결과 관용형성을 위한 여교사 워크샵 자료집」, 2001. 12
_____, 갈등해결워크샵 자료집「학교갈등과 평화」, 2002. 8
_____, 민주시민교육 시범커리큘럼과 일반 시범연수자료 개발『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의 갈등해결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12
_____,「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2004. 12
한국여성사회교육원,「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2000. 8.
_____,「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샵 2차 자료집」, 2000. 10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갈등해결과 또래중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사례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사례

윤 덕 찬 (교남 소망의집 기획실장)

Ⅰ. 규정의 제정 배경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달리 정신지체인의 경우, 지적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입소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연고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지적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짐으로써 인권보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집단생활 등의 시설 특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제한들로 인해 그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첫째,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생활 관련 내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생활장애인 역시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 소유물 보관・관리,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 등 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에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부 지침의 부재 및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소유와 관련해서 시설환경 및 담당교사의 태도에 따라 개인별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일괄적인 보관으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시설장애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보호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적재산의 소유・사용・처분 등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인의 지적능력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고 더 나

아가 시설퇴소를 하여 자신의 재산(동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신지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부분(주택 구입・전세, 근로계약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며, 또한 무연고로 인해 시설입소를 하였지만 자립능력이 향상되어 취업 등으로 재산이 조성되었을 경우 갑자기 연고자가 나타나 해당 장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며, 이때 시설 내에서 그들을 보살펴 온 시설장 및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돈이 쓰여지거나 저축되기 전에 장애인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용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의 금전에 대한 시설내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으로써 담당직원의 마인드에 따라 장애인의 사적 재산이 관리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단체변호사파견지원사업'을 통하여 공익변호사와 함께 본원의 정신지체장애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보호방안 모색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함으로써 시설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제 역할을 정립하고자 사업을 수행하였다.

Ⅱ. 규정 제정의 경과

2004. 2.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파견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2004. 3. 31. - 1차 정기회의
- 위원구성 : 염00, 윤00, 노00, 이00, 김0, 나0, 한00
- 회의내용 : 향후 추진내용 및 계획 수립

2004. 4. 7. - 2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보장 영역 분류 및 검토

2004. 4. 13. - 3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개인물품, 자기관리)

2004. 4. 20. - 4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성생활, 직업생활)
- 스터디 : 세계화 시대의 인권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 역저)

2004. 4. 27. - 5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실태조사내용 검토 (주거배치, 개인물품관리, 식생활 등)

· 스터디 : 인권과 인간의 욕구

2004. 5. 11. - 6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금전관리, 개인위생)

2004. 5. 18. - 7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인권지표 및 규정화 작업의 일정 조정

2004. 5. 24.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인권상담분석보고회 참가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참가

2004. 5. 25. - 8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대인관계, 음주 및 흡연)

2004. 6. 1. - 9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종교생활)

2004. 6. 9. - 10차 정기회의

· 스터디 : 민법상 재산권의 처분내용

2004. 6. 22. - 11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영역별 내용 취합 및 검토

2004. 6. 29. - 12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재산권 보장을 위한 규정 초안 검토

2004. 7. 6. - 13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세미나 개최방안 논의, 규정 내용 검토

2004. 7. 14. - 14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초안 검토 작업

2004. 7. 20. - 15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재산권보장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

2004. 7. 27. - 16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향후 일정 및 규정 작업에 대한 검토 작업

2004. 8. 3. - 17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최종안 작업

2004. 8. 17. - 18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재산권보장규정의 최종안 작업

2004. 8. 24. - 19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세미나 진행원고 정리 및 준비작업

Ⅲ.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내용 및 구성

1.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이들은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理想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에서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제3조) 및 이들에 대한 사회연대책임(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된 집단이 아니며 또한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이홍재, 1989;15).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제11조) 및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6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며,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법질서이며,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권영성, 1998;352).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법 앞의 평등원칙은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기회의 평등’에 근거하여 ‘장애라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장애인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는, 소극적으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장애인 인권의 직접적인 법이념적 근거가 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권 조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이므로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다(권영성, 1998;563).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권은 그 하층구조인 근로권, 근로3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보건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상호연대적 보장을 통하여서 구체적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며,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1] 따라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입법권에

1) 헌법학에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추상적 권리설을 취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그러나 추상적 권리설은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적인 권리로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규정설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실질적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권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대하여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체적 권리규범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김유성, 1997;92) 그러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다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나뉘어지는데, 그 실체적 권리는 소득보장수급권, 의료보장수급권, 복지서비스조치수급권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절차적 권리는 권리구제쟁송권, 행정 및 입법참여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으로 구성되는 규범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김유성, 1997;93, 이홍재, 1989;16).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9조는 "본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 차별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유형화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의 각 영역에 대한 차별적 상황들을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소비자권리, 여성장애인권리 등을 관심영역(대분류)과 세부관심영역(중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제적인 차별 상황과 연결하여 명시화(소분류)하여, 영역별·부문별 장애인 차별 실태를 구조화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영역별·부문별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장애인 차별 유형화의 관심영역(대분류)과 세부관심영역(중분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아동지표와 청소년 인권지표, 그리고 UN인권위원회 보고서, 장애인인권침해 유형조사 등을 참고하였다.

UN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규약)과 장애인의 인권과의 연관성을 분석

추상적 권리설은 근대의 소극적 시민국가에서 현대의 적극적 복지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과도기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대변하는 애매한 논리의 산물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보장수급권도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이므로 국가가 사회보장실현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권영성, 1998;567).

했으며,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조사는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7개)과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7개)으로 크게 분류하여 총 14개의 대항목으로 구성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와 유사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침해에 근접한 내용으로 상당부분에서 UN인권위원회 보고서와 부합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본 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쉽게 인권침해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1)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①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② 개인물품 관리 보장
③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④ 종교생활의 보장
⑤ 성생활의 보장
⑥ 식생활의 보장
⑦ 프로그램의 참여 등
⑧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2)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①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② 교육 및 학습 보장
③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④ 선거 및 참정 보장
⑤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⑥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관련 규정(예시)

제10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의복의 선택)

1. 장애인은 각자의 연령과 취향, 욕구에 따라 자신의 치수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상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구입하도록 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선택·구입을 하되, 담당직원의 임의대로 구입할 수 없다.

② (의복의 착·탈)

1. 장애인의 의복의 착·탈 시에는 그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의복을 빌려 입는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착의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토록 한다.
3. 중증 장애인의 의복 착·탈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성의 직원이 보조를 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의복 보관 및 정리정돈)

1. 장애인의 개인적 의복은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별 옷장에 보관되도록 한다.
2. 장애인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담당직원이 장애인의 의복 정리 지원 및 의복 폐기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획일적 의복 착용의 제한)

1. 시설 내·외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한다. 다만 캠프 및 체육대회 등 단합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특성상 동일한 종류·색상의 의복이 후원되었다 하여도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여서는 안되며, 시설장애인의 정원 중 1/10 이상이 동일 의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이·미용)

1. 장애인은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이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설 내에서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머리스타일을 되지 않아야 한다.
3. 장애인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헤어 젤, 빗, 밴드 등의 머리손질도구를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다.

⑥ (화장)

1. 장애인은 각자의 성별·연령과 취향, 피부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선택한 화장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제한

하여서는 안된다.

⑦ (화장실 이용)

1. 장애인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도 안된다.
2. 화장실은 사적공간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⑧ (목욕)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인의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목욕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일상 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개별화하고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11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피복비는 반드시 장애인의 피복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 및 물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개별 의류 보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세식 변기로써 여자용은 10인당 변기 2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목욕탕 및 화장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시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2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그에 따른 설명과 동의를 최대한 얻어야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3. 인권침해 사전예방 체계

1) 시설내 위원회 설치 · 운영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관장이나 직원 한사람이 준비하고 실행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위원회로서 시설 내에 '교남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교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행복추구의 실태를 조사・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인권보장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인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다.

- 구성 : 총 10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8인(외부인 3인 포함))

2)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

관련 예규

제73조(인권상황조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권 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교육강화)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본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75조(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행복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펼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본원 홈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글을 상주시키거나 홈페이지 내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을 따로 마련하여 인식개선의 장으로 삼는다.
2. 본원의 부지 입구, 각 기관의 출입구, 식당, 회의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를 물색하여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한다.
3. 책상용 또는 차량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부착한다.

4. 후원자(단체)의 교육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을 위한 인권 자료 준비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76조(연구모임 운영)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을 유도·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직 설립을 유도·지원한다.
2. 다른 기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3.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발표회를 개최한다.
4. 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식을 공유한다.

4.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1) 사후복구를 위한 사업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권이 훼손되었다면 즉시 복구토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동 규정에서는 ① 사실의 인지, ② 사실조사, ③ 위원회의 결정·조치, ④ 소속기관의 징계 조치 등 사안의 내용과 처리단계에 따라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인권침해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나 위원회의 심의, 기관의 징계 등에 있어 과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기관과 전 직원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벌백계로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

관련 예규

제77조(사실의 인지)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 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사실조사) ① 제73조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 및 제77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별지 1호」의 "장애인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보고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위원회의 결정・조치)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원 내와 본원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본원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본원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80조(소속기관의 징계조치) 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에서는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Ⅳ. 적용사례 및 애로사항

1. 규정 제정이후 적용사례

1) 장애인재산권 침해(박○○ 금전거래상에서의 재산권 침해)

가. 교남소망의집 직원 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남소망의집 입소자 박○○에게 2만원을 차용한 후 개인카드를 주어 변제하게 한 사안은 재산권 침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4월 1일(금) 17:30 경 피조사가 김○○는 박○○에게 2만원을 차용하고 4월 2일(토) 10시~11시 사이에 박○○에게 개인카드를 주어 2만원을 변제한 바,

교남인권보장위원회에서는 시설직원으로서 개인적 사유로 클라이언트와 채무관계를 맺고 개인카드를 주어 갚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직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라고 결정하였고 채무거래시 교남장애인재산권보장규정 제21조에 위배되어 박○○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함

나. 추가인출된 20만원에 대해 오○○이 박○○에게 보상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여부

4월 2일(토) 10시~11시 사이에 김○○가 박○○에게 개인카드를 주어 변제하게 한 후, 15시경 인터넷뱅킹으로 조회를 하였는데 20만원이 인출되고 2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한 내용을 김○○가 오○○에게 상담하여 그 부분에 대해 박○○와 민들레영토에서 상담을 하니 박○○가 가져갔다고 하여 현재 수입이 적으니 매월 5만원씩 갚기로 결정하고 오○○이 김○○에게 5만원을 변제함.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20만원과 2만원이 인출된 사안에 대해 인터넷뱅킹 통장자료를 물증자료를 확인하였으나 누가 인출을 하였는지는 증거자료가 없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박○○와 상담후 직원으로서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장애인에게 보상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해 교남장애인재산권보장규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박○○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함

다. 사건발생후 관련부서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보고후 사안에 대한 부서내 개입 여부

추가인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오○○은 4월 4일(월)에 4월 2일 추가 인출된 상황에 대해 부서내 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은 11일(월) 9일 추가 인출된 상황에 대해 부서내 회의에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함, 오○○은 보고후 개입이 없었으나 박○○ 夫 방문후 개입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은 보고후 개입하였다고 함.

황○○는 인출된 일자에 김○○·박○○와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휴가(4일)일에 부서회

의에 오○○이 보고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은 바,

본 위원회에서는 오○○이 부서내 보고를 하였는데 부서장과 오○○이 파악하는 사건 발생일, 보고일, 개입내용에 대해 서로의 진술이 다르며 인출된 일자에 황○○가 김○○·박○○와 상담을 하였는데도 부서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내 보고 및 전달체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라. 박○○ 관련

박○○ 상담시 재산권 침해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사요원이 질문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져갔다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잠잘 때 이불안에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울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부서에서는 박○○에게 정서적 치료를 지원해야 함

2)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관련기관의 반대 건

가. 경위

본원 그룹홈에 생활중인 박○○와 인근 복지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정○○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이성교제를 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복지관 측에 10차례 이상 계속적인 협조와 진행할 것을 요청함. 그러나 복지관 측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6년 9월 동의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혼 중지 및 사과 요구'의 공문을 보내옴.

해당 기관의 반대이유는 아직 아내와 주부로서 기본적인 역할수행이 부족하고, 본원에서 상의없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해당부서에서 본 위원회에 본 건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를 함.

나. 위원회 조치 및 대응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회의를 통해 복지관 측의 일방적인 반대는 장애인의 행복추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논의하고, 위원회 차원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실 통보와 함께 결혼에 협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문제제기할 것임을 통보함.

2. 규정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

1) 직원간의 관계

동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다보니, 전체직원 중 일부는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인권침해 사실조사의 경우에 있어 같은 동료직원들간에 누구는 조사자로, 누구는 피조사자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어 상호간의 갈등 또는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권보장범주,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직원들이 '위원들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두고 보자' 하는 식의 배타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원간의 관계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체직원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하여 활동케 하며, 회의내용 및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장애인과의 관계

시설보호의 전통적인 방식은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원과 생활인간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게 형성되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대리부모로써, 교사로써, 친구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다 보면 왠지 다소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력이 오래되어 시설생활인들과 젊음을 함께 하고 이제는 서로가 어느 정도의 나이에 들어선 직원들에게 목욕시킬 때는 이렇게 하고, 개인물품은 이렇게 관리하고, 용어는 이렇게 하라는 식의 지침이 큰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복지동향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직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배로서 후배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함으로써 경력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Ⅴ. 끝마치며...

"내 권리도 못 챙기는데 남의 권리는 무슨...."

"나는 규칙이란 걸 아주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니까 인권 문제랑은 별 상관이 없어"

혹시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모여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우리들 마음 역시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하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된 책을 보며,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시설서비스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평소 전혀 인권에 관심없던 사람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것이고, 또한 자기 권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쪽에서 "당신에겐 이런 권리가 있소"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의 잣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아주 손쉽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권에 대한 지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 또한 시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배우기 어려운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에서만이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찾고 싶고 인권을 존중하고 싶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어우러져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과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그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과 사업내용이 아직은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 록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유엔아동권리협약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05.24 법률 제 648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개정 2005.8.4>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5.7.29>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05.7.29>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라.「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7.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05.7.29>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 야 한다.<개정 2005.7.29>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2005.7.29>.<2004.1.29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 조 효력상실>

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7.29>

③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5.7.29>

④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7.29>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7.29>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15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2.29>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

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⑥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립·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2005.7.29>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 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

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

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개정 2005.7.29>
2. 조사결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5.7.29>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

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7.29>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5.7.29>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조정위원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7.29>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9>

제42조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개정 2005.7.29>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개정2005.7.29>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개정 2005.7.29>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 의 배제 <개정 2005.7.29>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

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보 칙

제51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 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 칙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개정 2005.7.29>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 2008.1.1] 제56조제2항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1.11.25]

제58조 (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부록 2>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당사국 192개국(기준일 2004. 11. 24)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1],
제 43조항 제 2항 개정(채택일 1995.12.12/발효일 2002.11.18)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1)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a) 및 제40조 제2항 (b)(v)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 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권

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고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

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 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

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 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vii)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

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

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b) 그 후 5년 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

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